

1981

통 계 조 사 지 침

제 2 권

광공업 동태조사

006107

차 례

1 . 조사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조사사항	3
다. 조사대상 및 단위	5
라. 조사시기	7
마. 조사방법	7
바. 집계 및 공표	7
2 . 실사 및 면접	8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8
나. 실 사	8
다. 유고사업체 처리	9
라. 신규대상사업체의 색출	12
마. 기존사업체의 품목신규 및 품목중지	13
바. 면 접	14
3 . 조사표류 기입요령	15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15
나. 물량조사표 (I - A) 기입요령	17
다. 금액조사표 (II - A) 기입요령	31

라. 전기업 동태조사표 (I - B) 기입요령	34
4. 검토 및 제출	36
가. 검토	36
나. 제출	37
부록 I 문제점 및 유의사항	39
부록 II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품목 분류	83
부록 III 도량형단위 환산표	150

1.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1954년에 시작된 조사로서

- 1) 산업생산지수를 비롯한 각종 광공업에 관한 지수를 편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 2) 광공업 사업체의 고용 및 급여와 투입원재료의 소비 및 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며
- 3) 주요 품목에 대한 월별 물량 통계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조사사항

1) 조사의 종류

당원의 광공업동태조사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조사로 구분된다.

가) 광공업동태조사

이 조사는 지정된 광공업사업체의 제품과 원재료중 매월 지정된 품목(부록Ⅱ-가, Ⅱ-나참조)에 대한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물량을 조사 파악하는 물량조사와 생산액, 출하액, 재고액 등의 금액으로 접근하는 금액조사로 나뉘어 진다.

금액조사를 실시하는 부문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부문은 물량 조사한다.

- (1) 산업세세분류 32200 의복제조업
- (2) 산업세세분류 35220 의약품제조업

물량조사시에는 조사표 (I - A) 를 사용하며 금액 조사시는 조사표 (II - A) 를 의약품 생산 사업체 조사시는 조사표 (II - B) 를 사용하여야 한다. 금액조사 대상사업체라 하더라도 물량조사의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물량조사표 (I - A) 도 함께 작성하되 “ 고용 및 급여 ” 는 중복기입하여서는 안 된다.

나) 전기업동태조사

전기업부문의 발전동태를 파악하고자 매월 전기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표 (I - B) 를 사용한다.

2) 조사표 내용

가) 제 품

월초재고량, 생산량, 자가소비량, 출하량 (시 판, 수출로 구분),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나) 원재료

각 원재료별로 국산, 수입으로 구분하여 월초재고량, 구입량, 자가생산량, 사용량,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다) 고용 및 급여

피고용자 (생산종업원, 사무 및 기타종업원),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 월말종업원수, 월중연근무인원수, 월중연근무시간수, 급여액

라) 조업일수

마) 적 요

제품, 원재료, 고용 및 급여부문의 증감요인을 분석하고 출하대

상속이나 대상처를 기입

다. 조사대상 및 단위

1) 조사대상

산업상의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및 전기업이며 조사대상사업체는 종업원 5인 이상의 전기(前記)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중 당원이 지정한 사업체만을 조사한다.

각 조사원이 담당할 조사대상 사업체는 각 조사구별 명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사의 종류도 명시되어 있음

“물”(物) 물량조사

“금”(金) 금액조사

가) 광업 및 채석업의 정의(定義)

광업 및 채석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석탄가스), 액체(원유), 고체(석탄 및 금속)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 활동 즉 쇄광(碎鉱), 세척(洗滌), 체질, 선광(選鉱), 용해 및 건조 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든 타 사업자가 하든 간에 포함된다.

※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36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에 포함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지든 집안에서 행하여지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2) 조사단위 (調查單位)

조사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구역을 점거하고 그 곳에서 제품, 광산물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독립된 「물리적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1) 단일경영체에 속하는 몇 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구내에 있더라도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량, 제품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장부 또는 기록이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서로 떨어져서 다른 구내에 분리되어 있더라도 경영장부 또는

기록이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다) 광업사업체는 덕대제인 경우 덕대단위를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라. 조사시기

조사의 기준일자는 매월 말일이며 조사 기준기간은 그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마. 조사방법

면접식 타제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통계요원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는 우편 조사한다.

바. 집계 및 공포

제출된 조사표는 심사, 부호기입, 기계 집계, 분석 등을 거쳐 “산업생산출하채고량속보”로 발간 매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구체적인 자료는 “한국통계월보” 및 “산업생산연보”에 게재 공표한다.

2. 실 사 및 면 접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 1) 소장은 당해 조사구내에 새로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색출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2) 광공업동태조사 사업체명부에 이미 부여된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산업분류, 지정생산품명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소장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사업체에서 새로이 지정품목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조사표 제품란에 기재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입하여야 하며 생산량 유무를 막론하고 매월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등을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3) 소장은 조사기록부 전량을 중앙에 송부하여야 한다.
- 4) 유고사업체일지라도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계속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실 사

-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조사구내의 지정 사업체를 순방하여 각종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응답자의 부재 등 제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치 못하였거나 조사표 기입상에 잘못이 발견된 사업체는 10일~12일 사이에 재방문하여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토록 한다.

- 2) 별도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다음 조사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이 조사기록부와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사의 누락이나 월초재고량 일치여부 오기 또는 잘못된 조사가 없이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 3) 사업체에서 결산지연 등의 사유에 의하여 기간내 조사표를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월 생산량 자료를 참고로 사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잠정조사표를 제출한 후 그 다음 확정조사표를 제출한다.
단, 매월지연되는 사업체는 사전에 중앙에 보고하여 별도지시를 받는다.
- 4) 실사완료된 조사표는 재조사 지시나 질의 조회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5) 실사 순방시 관할구역내 신규사업체 및 사업체 이동 등 변동 사항을 아울러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응답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 및 명칭변경의 사업체를 말하며 각자가 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위와 같은 유고사업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응답을 거절하는 사업체

응답을 거절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업체명, 거절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을 별도 배포된 유고사업체 보고서식(1-1)에 의거 소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휴업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휴업인 경우에도 매월 그 사업체를 방문하여 재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표에는 미해고된 잔유종업원 수, 재고품의 출하 등에 관하여 기입하고 적요란에 「휴업중」이라 명기하여 조사표를 제출하고 유고사업체 보고서식(1-1)에 기재하여 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재가동되었을 때는 정상적인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광업사업체인 경우에는 매장량과 품위를 파악하고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실적보고가 있는지 매월 확인보고하여야 한다.

3) 폐업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체명칭, 폐업일자, 폐업이유와 기타 참고자료를 “유고사업체보고서식”(1-1)에 기재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폐업한 월의 조사는 적요란에 “폐업”이라 명기하여 제출하며 조사중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또한, 매월 그 사업체가 위치했던 곳을 순회하여 새로운 사업체의 신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체 색출요령에 의거 색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전사업체

가) 조사대상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등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이전지를 찾아 내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 이전된 곳이 담당조사구 내인 경우에는 계속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적요란에 이전이라고 명기하고 이전된 곳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제 변경사항을 기입하여 소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자기가 담당하는 조사구외로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월에 한하여 조사표 적요란에 "이전"이라 기입하여 제출하되 별도로 사업체명, 이전전 소재지, 이전후 소재지, 신규 전화번호 및 기타 참고사항을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2)에 기입하여 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대상사업체가 회계처리상의 이유로 인하여 타조사구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본사 또는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2)에 기입하여 관할 소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매월 이전된 전사업체의 소재지를 순회하여 새로운 사업체의 신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체 색출보고요령에 의거하여 색출보고서를 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이전사업체 편입에 대한 추가실사 지시가 있으면 즉시 그 사

업체를 명부에 추가하고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

5) 소재불명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이웃에 문의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찾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I - 1) 에 기입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6) 전업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전업하여 지정된 조사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지정된 조사대상 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표의 적요란에 "전업"이라 명기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 - 3)"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7) 명칭변경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의 적요란에 "명칭변경"이라 기입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변경된 명칭, 변경 후 명칭 및 변경일자 등을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 - 2) 에 기입하여 소장에게 제출한다.

라. 신규대상사업체의 색출

광공업 동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신규사업체를 색출 보고하여 조사대상사업체 명부를 보완한다.

1) 색출대상사업체

- 가) 광공업통계조사(연간조사)에서 조사 누락되었거나 그후 신설된 사업체로서 조사대상 지정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 나) 광공업통계조사(연간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사업체 중 전업하여 조사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2) 색출보고요령

현지 조사에서 색출하거나 또는 시, 군행정기관에 비치된 제자료에 의하여 색출하여 소정의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 색출보고서식」에 의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비실사(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입)

신규로 색출된 사업체에 대하여 예비실사 지시를 받은 통제요원은 해당 사업체의 예비실사를 완료하고 소정의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 예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표 제출시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추가대상사업체

사무소장은 추가대상사업체에 대한 실사지시를 받은 경우에 즉시 그 사업체를 조사기록부 사업체 명단에 추가하고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

마. 기존사업체의 품목신규 및 품목중지

- 1) 사무소장은 기존대상사업체에서 사업확장이나, 시설확장, 전업등의 이유로 신규품목을 생산할 경우 “품목신규보고서”(소정양식)

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체의 조사표에 추
가로 조사하고 최초조사월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그리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한다.

- 2) 통계 요원은 기존대상사업체에서 업체사정으로 기존품목의 일부를
생산 중단할 경우는 “품목중지보고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소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사업체의 조사표에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
지 계속 그 품목란에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바. 면 접

- 1) 대규모사업체(장부비치사업체)와 같이 측석에서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본 조사표를 교부한 후 각 항목별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2) 항상 응답자와의 원활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여 응답자의 신
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3) 응답을 거절할 경우 재삼 취지를 설명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시
에는 그 사업체의 대표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그도 불가능할 시는 소장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 지시에 따른다.

3.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조사표의 기입에 앞서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조사표는 청색 또는 흑색잉크나 볼펜을 사용한다.
- 2)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다.
- 3) 숫자 이외는 가급적 한자의 정자를 사용한다.
- 4) 규격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구분하여 기입하고 각 품위 함량, 용량 등의 품질규격을 기입토록 한다.
- 5) 각 수량에 있어 단위 미만과 금액에 있어 천원 미만은 4사 5입하여야 한다.
- 6)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7) 단위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 8) 오기사항을 정정코자 할 때는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올바른 것을 기입하되 적색 또는 주색 잉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즉 오기된 것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오기

된 것에는 횡선을 그어 다음에 알아 보도록 하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기입한다.

9) 조사표는 통계요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서에 서의 기입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엔 응답자에게 기입을 의뢰하여도 좋다.

단, 응답자에게 기입을 의뢰할 때는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기입이 완료된 조사표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10) ※표가 있는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11) 생산량과 고용 및 급여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응답자에게 확인하여 적요란에 그 요인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12) 물량 및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조사표에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과 같이 자리를 미리 정해 놓았으니 이에 맞추어 기입하여야 한다.

13) 조사구번호 및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명부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14) 출하대상국 또는 출하대상처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2)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3) 광업의 경우 덕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 광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 명칭란 우단에 덕대라고 명기하여야 하고 광석의 판매처를 적요란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다)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담당사업체명부에 부여된 조사구번호와 사업체번호를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고정시켜 기입한다.

라) 산업분류

사업체별로 지정된 산업분류번호를 기입하되 5째자리까지 기입한다.

예 : 23010

23023

2) 제 품

가) 제품은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원재료 또는 구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생산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위탁자가 광공업부문의 아닌 건설업, 도소매업, 서어비스업, 무역상사, 개인 등인 경우에는 수탁제조업체에서 조사한다.

나) 조사표에 기입할 품목은 그 사업체의 품목중에서 “지정품목분

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에 한한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일 단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중간 제품이 "지정 품목분류표"에 있을 경우에만 제품으로 간주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표에 품목을 기입하기 전에 이 "품목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업체의 제품 중에서 어느 것이 조사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체의 제품이 "품목분류표"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제품의 구체적인 성질 및 용도를 알아 내어 해당 품목명을 기입할 것이며 그래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기입한다.

(가) 품목번호 및 품목명

- (1) 품목번호 "지정 품목분류표"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만약, 한 단위만 틀려도 기재 집계를 하기 때문에 결과치가 판이하게 나타나니 유의하여야 한다.

예 : 03030 금광석 0

03040 은광석 0

- (2) 품목명 "지정 품목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하며 단일 제품이 동 분류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하되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분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 : × 합성수지 () → ○ 요소수지 ()

× 양은식기 () → ○ 알미늄프레스가공식기 및 용기

× 가구류 () → ○ “장농”

또한 사업체명부상에는 각 사업체별로 생산품목이 명시되어 있으니 조사표 작성시 생산량 유무를 불문하고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체에서 새로이 지정 품목을 생산할 경우나 생산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도 그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규격 및 단위

각 품목의 규격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품목의 규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동일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여러 가지 규격품을 단일 규격으로 환산 가능할 때는 단일 규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특히, 광업에서는 각 광석의 품위를 화학제조업 및 기계기구제조업에는 규격 및 용량을, 규격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각 품목의 단위는 “지정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며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만약 제품명을 “지정 품목분류표”에서 찾지 못하여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수량 단위는 “미터법”에 의하여야 한다.

(가) 월초재고량 (전월 말재고)

그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였던 제품의 재고량, 즉 전월에서 이월된 재고량을 말한다. 따라서 전월에 조사·보고된 조사표상의 월말재고량과 금월의 월초재고량은 일치하여야 한다.

그 사업체에서 수탁가공한 제품과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제품의 재고량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서는 안된다.

(나) 월중생산량

그 월의 초일에서 말일까지의 1개월간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것과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생산한 제품을 포함한다.

생산량은 전월생산량과 금월생산량으로 구분하여 주어진 단위란에 기입한다.

생산이란 조사기간내에 최종적인 사내 검사를 완료하고 그 사업체에서 제품으로 정리된 것을 말하며 사업체에서 일단계의 생산을 하고 다시 다른 제품으로 제조되는 중간제품도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는 생산품목으로 간주한다.

예 : 어떤 방직공장에서 면사 1,000 kg을 생산하고 그중 500 kg을 판매하고 나머지 500 kg을 가지고 다시 600 m²의 광목을 생산하였다면 이 사업체의 생산량은 면사 1,000 kg, 광목 600 m²으로 기입되어야 한다.

생산량은 전월생산량과 금월생산량으로 구분 기입한다.

전월생산량은 기보고된 수치와 일치하여야 하며 금월생산량과 비교하여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요인을 밝혀 적요란에 기록한다.

(가) 자가소비량

그 월중에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한 양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광목생산을 위하여 소비한 500kg의 면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위탁생산을 위하여 타 사업체에 반출된 중간제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 출하량 (판매량 등)

그 사업체에서 실제 생산한 제품 및 타 사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 중에서 조사기간 내에 실제로 그 사업체의 소유를 떠난 부분의 총량을 말하며 이를 시판과 수출로 구분한다.

1) 시판은

즉 가) 외부에 판매한 것 (외상판매 포함)

나) 동일 기업체 내에서 타 사업체에 반출된 것

다) 견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라) 그 사업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것의 합계량을 말하며

2) 수출은

가) 외국에 수출한 것

나) 외국에 견본 또는 선물로 증정한 것
의 합계량을 말한다.

(사) 과부족보정량

그 월간에 화재, 도난 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 처분된량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 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량도 이에 포함된다.

증 감은 「+」「-」의 부호로 표시하며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아) 월말재고량

그 월의 말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량을 말한다.

수탁가공한 제품과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당월말재고량 = 익월초재고량

3) 원재료, 연료 및 전력

원재료라 함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주원료와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같은 보조원료를 말하며 이를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수입원재료라 함은 그 사업체에서 수입된 원재료는 물론 무역회사를 통한 수입원재료도 포함된다.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제조시킨 경우의 원재료는 포함시켜야 하나 타 사업체로부터 수탁생산을 맡은 경우에 타 사업체로

부터 지급된 원재료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가) 원재료번호 및 원재료명

(1)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분류표 ”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제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단위만 틀려도 기계집계의 결과가 전혀 틀리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원재료명

“ 지정원재료 분류표 ”에 의하여 기입하되 만일 동분류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이고 세분된 명칭을 사용하고 추후 별도 지시에 따른다.

(3) 구분란의 국산품과 수입품의 분류는 원재료 그 자체가 국내에서 제조된 것인가(국산품), 외국에서 제조된 것인가(수입품)에 따라 분류하며 국산품이면 1, 수입품이면 2에 ○표시하고 만약 사업체가 국산품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할 때는 란을 달리하여 각각 기입한다.

예 : (가) 국산품만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	규격	단위	구분		월초재고량	구입량	자가생산량
			국산	수입			
소맥		㎏	①	2	50	200	100

(가) 수입품만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	규격	단위	구 분		월초재고량	구입량	자가생산량
			국산	수입			
소 맥		℥	1	②	20	100	

(나) 국산품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	규격	단위	구 분		월초재고량	구입량	자가생산량
			국산	수입			
소 맥		℥	①	2	50	200	100
소 맥		℥	1	②	20	100	

나) 규격 및 단위

(1) 규 격

원재료에 대한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 원재료의 규격을 그대로 적는다. 단, 동일명칭의 원재료라도 현저한 차격의 차이가 있으면 규격별로 기입하며 단일규격으로 환산이 가능할 때는 이를 환산하여 기입한다.

(2) 단 위

각 원재료의 단위는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

용하되 이것이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다를 때는 지정 단위로 환산한다. 만약, 원재료명을 “지정원재료분류표”에서 찾지 못하여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 수량의 단위를 “미터법”에 의하여 기입한다.

다) 월초재고량 (전월말재고량)

그 월의 초일에 그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원재료의량을 말한다.

라) 구입량

그 월중에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량을 말하며 동일기업의 타 사업체로부터의 반입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 자가생산량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중간제품으로 최종제품 생산을 위하여 그 월중에 원재료로서 사용된량을 말한다.

바) 사용량

광산물 및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그 월간에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량 (제품란의 자가소비량도 여기에 포함됨)을 말하며 위탁생산을 위하여 타 사업체에 공급한량도 포함한다.

사) 과부족보정량 (過不足補正量)

“제품”에서의 “과부족보정량”에 준하며, 구입한 원재료를 외부에 판매했거나 동일기업내의 타 사업체로 반출하였을 때 「-」 부호를 붙여서 기입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아) 월말재고량

“제품”에서의 “월말재고량”의 정의와 같다.

4) 고용 및 급여

가) 피고용자(被雇傭者)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임금이나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는 모든 남녀 종업원을 말한다.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고(日雇)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 군복무자는 제외시킨다. 또한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 수탁(受託)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피고용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생산종업원

제품 또는 광산물의 생산에 직접 관련있는 현장종업원 또는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보조원을 말한다.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실제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생산종업원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 제조업의 경우

제조(製造), 가공(加工), 검사(檢査),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貯蔵), 조작(操作), 포장(包裝), 입고(入庫), 출하(出荷), 보수(補修) 등의 업무와 보조적인 생

산품의 생산업무, 생산공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생산종업원이다.

(나) 광공업의 경우

채광(採鉱), 굴진(掘進),坑내지주(坑内支主), 권양(捲揚) 환기(換氣), 배수(排水), 천공(穿孔), 발파(發破), 분쇄(粉碎), 선광(選鉱), 검사(檢査), 저장(貯蔵), 출하(出荷) 보전(保全) 등의 업무와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무 및 기타종업원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 생산작업에 직접 관련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그리고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인사, 기획, 경리, 선전, 판매, 배달 등 실제로 육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종업원을 말한다. 그리고 보수를 받는 지배인, 중역 등도 이에 포함한다.

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1)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무급가족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가 있는 자로 사업체의 업무를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다) 월말종업원수

그 월말 현재의 그 사업체 종업원수를 말한다. 만약 월말 현재로 조사가 곤란할 때에는 그 월말에 가장 가까운 급여계산일을 기준한 종업원수를 기입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일고종업원의 일별근무인원이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에는 월중조업일의 평균인원을 기입한다.

라) 월중연근무인원수 (月中延勤務人員數)

그 월중에 실제로 근무한 종업원의 연 인원수, 다시 말하면 일별근무인원 (日別勤務人員)의 월중누계를 말한다.

예 : 월중조업일수를 26일이라 하고 처음 10일간에 15명씩 그리고 다음 6일간에 20명씩, 나머지 10일간에 25명씩 근무하였다면 월중연근무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15 \text{명} \times 10 \text{일} + 20 \text{명} \times 6 \text{일} + 25 \text{명} \times 10 \text{일} = 520 \text{명}$$

마) 월중연근무시간수 (月中延勤務時間數)

그 월중에 실제로 근무한 종업원의 연근무시간수, 다시 말하면 일별 전 종업원의 근무시간수를 월중 누계한 것을 말한다.

예 : 종업원 10명이 25일동안 근무하였는데, 5명은 매일 8시간씩 근무하고, 3명은 4일간 4시간 근무한 후 조퇴하고, 2명은 2일간 근무하지 않았다면 월중연근무 시간수는 다음과 같다.

$$5 \text{명} \times 25 \text{일} \times 8 \text{시간} + 3 \text{명} \times 4 \text{일} \times 4 \text{시간} + 2 \text{명} \times 23 \text{일} \times 8 \text{시간} = 1,920 \text{시간}$$

바) 조업일수

그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로 생산활동을 영위한 일수를 말한다.
1일 24시간을 교대로 작업을 계속하였어도 조업일수는 1일로
계산한다.

5) 적 요

가) 생산 출하 및 원재료 증감요인

제품의 생산, 출하, 재고량과 원재료 등이 천월과 비교하여 증
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만일 기입되지 않은 것은 지도원이 접수시
“체크”하여 반려토록 되어 있으니 조사표 작성시 증감 여하에
관한 요인을 기입하여야 한다.

예 : 시설보수로 인한 조업단축 (10일~15일까지)

수출수요 증대 (미국, 캐나다)

관납증대 (농협, 철도청)

건축비수기 등

나) 고용 및 급여 증감요인

고용 및 급여에 대하여서도 종업원 및 급여액에 차이가 심하
면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예 : 종업원수 증가는 임시종업원 ○○명 증가, 급여액 증가는 능
률급 지급, 보나스()% 지급, 정기()%승급, 특별시간외 수당지
급 등

다) 광업사업체는 광산물의 판매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라) 기타 참고사항

휴업, 폐업, 이전, 소재불명 등의 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다. 금액조사표 (Ⅱ - A) 기입요령

1) 제 품

가) 완제품

구입원재료 또는 자가생산원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한 최종 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생산한 제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조공정 상에서 생긴 부산물이나 제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포함된다.

나) 수탁제조 또는 수리수입액

수탁제조 수입액은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 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주고 그 월중에 기성고분(既成高分)에 대하여 받은 수입액(미수금을 포함)을 기입한다.

그리고 수리수입액이라 함은 타인의 소유물을 수리하여 주고 받은 수입액(미수금 포함)을 말하며 제조공정상에서 생긴 부산물이나 폐품 등을 포함한다.

다) 월초제품재고액(전월말 제품재고액)

그 월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완제품 및 기타 부산물, 폐품 등의 재고액을 말하며 평가는 장부가액 또는 생

산원가에 의한다. 단, 장부가격이 없거나 원가의 제산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의 미출고분(未出庫分)은 재고로 보지 않으며 또한 위탁생산(受託生産)한 제품은 위탁사업체의 재고액에서 제외된다.

$$\text{월초재고액} = \text{전월재고액}$$

라) 월중생산액

해당월의 초일에서 말일까지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것과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액을 포함한다.

월중생산액은 사업체에서 조사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생산액을 환산해서 기입할 것(의복류와 의약품)

$$\text{“월중생산액} = \text{출하액(시판액} + \text{수출액)} \pm \text{과부족보정액} + \text{월말재고액} \\ \text{- 월초재고액”}$$

마) 출하액

(1) 시 판

그 사업체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위탁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한 그 월중의 판매액을 말하며 위탁판매 및 의상판매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동일기업체내의 타사업체에 반출한 것, 견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그 사업체 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평가하여 포함한다.

반면에 구입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대로 재판매하였거나 위탁생산한 제품의 판매는 그 사업체의 출하로 보지 않는다.

출하제품의 평가는 공장인도 가격에 의하여 물품세 부과대상

품인 경우에는 동 세금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한다.

(2) 수 출

수출한 제품은 계약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평가하여야 한다.

바) 월말 재고액

사업체가 그 월의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완제품 및 기타의 재고액을 말하며 평가는 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의한다. 생산원가에 의한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장부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사) 과부족보정액

그 월간 화재, 도난 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액과 재물 조사시 발견한 증감액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액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 「-」기호로 표시한 금액을 기재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원재료, 연료 및 동력

물량조사표 (I - A) 의 원재료, 연료 및 동력란에 기입요령에 준한다.

3) 고용 및 급여

물량조사표의 “고용 및 급여”에 준한다.

다만, 한 사업체에서 물량조사와 금액조사를 동시에 작성할 경우에는 고용 및 급여 통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금액조사에서는

조사치 않고 물량조사표에만 조사 개입한다.

4) 적 요

물량조사표 적요란 기입요령에 준한다.

라. 전기업 동태조사표 (I - B) 기입요령

1) 발전량

가) 총발전량

그 월중에 발전한 총발전량을 각 시도별로 기입한다.

나) 자가소비전력량

각 발전소가 그 월중에 발전을 위하여 소비한 전력량으로서
본사, 지점 및 각 영업소의 소비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순발전량

총발전량에서 자가소비전력량을 차감한 전력량을 말한다.

2) 종합손실전력량

각 단계의 송전 및 배전 과정에 생기는 손실 전력량의 총계를
말한다.

3) 수용전력량

그 월중에 판매한 수요 부문별, 전력량을 기입한다.

가정용은 일반 가정에 공급한 전력량이며 산업용은 농림수산업, 광
업, 제조업 및 기타 산업(서서비스, 전철 등)별로 공급한 전력량
을 기입하고 기타는 관, 군, UN 군, 사업자용(한전 사업소) 등에 공

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4) 고용 및 급여

물량조사의 「고용 및 급여」에 준한다.

4. 검토 및 제출

가. 검 토

접수된 조사표가 질의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기준일 (년 월 분),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산업분류번호 등의 기입누락 여부
- 2) 제품의 단위에 있어서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수량단위의 사용여부
- 3) 품목명 및 품목번호가 “지정 품목분류표”에 지정된대로 기입되었으며 사업체 명부상에 지정된 생산품목 누락 여부
- 4) 월중의 생산량과 원재료사용량의 합리성 여부
- 5) 전월말재고 (이미 제출된 조사표에 기재된 것)와 금월초재고의 일치여부
- 6) 「월초재고량+월중생산량-자가소비량-출하량(시판량+수출량)±과부족보정량=월말재고량」의 성립 여부
- 7) 업종별 지정원재료의 누락여부, 원재료명, 원재료번호 및 단위가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의하여 기입되었는지의 여부
- 8) 원재료에 대하여 「월초재고량+월중구입량+자가생산량-월중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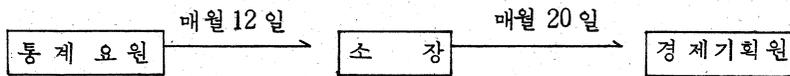
용량±과부족보정량=월말재고량」의 성립 여부 및 국산(1)이나 수입(2)의 구분 표시 여부

9) 월중의 생산량과 원재료 사용량과 종업원수와의 타당성 여부

10) 조사된 숫자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10%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11) 기타 기입사항의 옳기 또는 누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제 출



1) 조사원이 직접 답사하면서 배부한 조사표는 늦어도 실사기간 최종일 까지 그 전부를 회수하되 개개의 조사표 오기 누락 등이 없는가를 “조사표검토요령”에 의거 검토한 후 불완전한 점이 있으면 즉시 재 조사하여야 한다.

2) 매 실사월의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5매 내지 10매씩 분할하여 제출하되 늦어도 그 달의 12일까지는 담당조사표 전부가 소장에게 필착토록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내검된 조사표를 13일부터 매일 균등하게 발송하여 20일까지 중앙에 필착토록 할 것이며 18일 이후 발송시에는 등

기 속달우편으로 송부할 것.

- 4)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표 회수가 늦어지면 지연 사유를 통제요원은 소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소장은 발송기준일인 18일전 발송이 어려운 사업체에 대하여는 조사표일일제출실적보고서에 지연사유를 기재하여 증상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 I. 문제점 및 유의사항

일반적인 사항

이 문제점 및 유의사항은 그 동안 광공업 동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어나는 제 문제점과 실사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요점을 수록한 것으로서 본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반드시 숙지하고 임해야 하며 차후부터는 여기에 수록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조사질의나 재조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계 집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해당사업체의 지정품목은 계절에 따라 생산이 없거나 주문이 없어서 생산이 없을지라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매월 조사표에 기입 보고한다. 단, 사업체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성이 도저히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여 조사중지를 받을 수 있다.

(2) 광업, 화학, 기계제조업, 섬유 등은 각 품위, 함량, 용량, 비율 등의 품질, 규격을 기입토록 한다.

또한 동일 명칭의 품목일지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해야 한다.

(3) 유고사업체가 발생하면 즉시 소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폐업, 이전, 소재불명, 전업사업체도 조사중지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제출하며 사업체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등의 변경시에는 사업체 명부를 정정한 후 보고하고 조사를 계속한다.

관리계장은 유고사업체보고중 이전의 경우는 담당구역을 확인하여 이전조치한 후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고 여타 유고사항에 대해선 취합하여 중앙에 일괄 보고한다.

(4) 통계요원은 조사기록부를 잘 활용해야 한다. 조사기록부에 조사사항을 기록하여 다음 조사시 증감체크와 월초재고량 일치여부, 조사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표 분실의 경우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타 문제되는 품목은 조사지침서 부록인 「제품해설집」을 활용토록 한다.

제 품

산업소분류 210, 230, 290 광업

(I) 휴광, 폐광 사업체에 대한 조치

1) 휴광 사업체

가. 휴광 사유의 정확한 조사

나. 매장량이나 품위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다. 광산주를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자료를 얻을 것.

라. 재가동 시기의 조사를 정확히 하여 누락되는 재가동 광산이 없도록 할 것.

마. 자금난으로 인한 휴광이 가장 많고 그 기간도 몇년씩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광산주를 직접 방문하여 재가동할 수 있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바. 관할 동사무소나 읍, 면사무소에 실적 보고가 있는지 매월 확인한다.

사. 가능한 한 2, 3개월에 한번씩 광산을 직접 방문하여 재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아. 재가동 불능일 경우에는 휴광이라도 조사 중지하여 부담을 줄일 것이니 성의 있게 조사하여 보고 할 것.

2) 폐광사업체

가. 폐광 사유와 매장량 품위의 정확한 조사

나. 광석의 가격이 오르거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가동할 수 있는 광산이 있는데 이런 광산의 경우에는 휴광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

다. 광산은 조사 중지시키기 극히 어려우므로 신빙성 있는 타당한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고할 것.

(2) 품위환산문제

1) 품위 환산 조건표의 설명

가. 기준품위의 개념 : 환산에 편리하도록 또는 가장 중심이 되는 품위를 설정하여 총물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수치이다.

나. 환산수치 : 광산물은 그 품위에 따라 실수율 혹은 실채취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동광석 20%라면 실수율은 94.5%, 10%라면 93%, 2%일 경우 82.0%로 실수율은 떨어진다.

환산 조건표의 수치는 이러한 실수율을 합리적으로 적용시켜 얻어진 수치이니, 비례식을 적용하여 환산하지 말고, 지침서의 환산 조건표에 따라 환산할 것.

2) 실제 환산 방법

가. 동광석 100%의 품위 10%인 경우

10% 환산수치 0.630을 곱해 주면된다.

$$100\% \times 0.630 = 63\%$$

나. 동광석 100%의 품위 12.5%와 12.55%의 경우

ㄱ. 품위 12.5% $100\% \times [0.733 + (0.847 - 0.733) \times \frac{5}{10}]$

ㄴ. 품위 12.55% $100\% \times [0.733 + (0.847 - 0.733) \times \frac{55}{100}]$

12%의 환산수치 : 0.733 13%의 환산수치 : 0.847

다. 매월 품위가 달라지는 경우

ㄱ. 월초 재고(즉 전월말 재고)는 전월에 환산했던 수치 그대로 적는다.

ㄴ. 생산, 출하는 기준품위로 환산한다.

ㄷ. 월말재고량 = 월초재고량 + 생산량 - 출하량 ± 과부족보정량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ㄹ. 생산 > 출하인 경우 남은 물량을 환산해서 월초재고의 기환산된 물량에 더해 주면 된다.

ㅁ. 생산 < 출하인 경우 출하 - 생산해서 남은 물량을 전월의 품위로 환산한 물량만큼 기환산된 물량에서 감해주면 된다. 그리고 과부족보정량이 발생할 경우에도 환산하여 가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바. 동광석 월초재고가 품위 10% 100%이고 생산, 출하가 각각 11% 100%, 50%인 경우의 환산실례

$$\text{월초재고} : 100\% \times 0.630 = 63\%$$

생 산 : $100\% \times 0.700 = 70\%$

출 하 : $50\% \times 0.700 = 35\%$

월말재고 : 월초재고 $63\% + (100\% - 50\%) \times 0.700 = 98\%$

ㄱ 실제 조사표 작성요령

품 목 명	규 격	단 위	월초재고량	생산량	출하량	월말재고량
동광석	11 %	%	100	100	50	150
	15 %	%	63	7.0	35	98

라. 품위 환산조건표에 없는 품목은 비례식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즉 품위 70%, 형석 30%를 생산한 것을 환산하면 기준품위가 80%이므로 $30\% \times 70 (\text{실제품위}) / 80 (\text{기준품위}) = 26\%$ 이다.

(3) 기준품위 : 무 연 탄 : 4,800 ~ 5,000 Cal

철 광 석 : Fe 56% (조건표에 의거 환산할 것)

중 석 광 석 : W_o_3 70% (")

금광석 (금괴) : Au 99.9 %

은광석 (은괴) : Ag 99.9 %

동 광 석 : Cu 15% (조건표에 의거 환산할 것)

연 광 석 : Fe 50% (")

아 연 광 석 : Zn 50% (")

몰리브데늄광석 : $M_o_s_2$ 90 (")

석 회 석 : Cao 50 %

인 상 흑연 : Fc 75 %

토 상 흑연 : Fc 75 %

활 석 광석 : 각급

형 석 광석 : Ca F₂ 80 %

남 석 : SK # 32

고 령 토 : SK # 34

(4) 조사표 작성시

- 1) 제품 : 광산측에서 뽑아주는 품위와 물량을 기입하고 그 밑칸에 기준품위로 환산한 물량을 기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품목을 필히 2종류로 기입해야 하는 것이다. 매월 품위가 달라진다면 기준품위로 환산한 물량의 등식은 일치하여야 한다.

[예] P. 44 사. 실제 조사표 작성요령

- 2) 원재료, 고용급여, 연료 및 전력

쟁목, 폭약이 누락되는 광산이 많고 연료 및 전력부분도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니 누락하여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적 요 란

증감요인은 필히 기입하여야 한다. 대상처난에 광석의 판매처는 매월 기입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조그만 차이일경우에도 직접 실무자에게서 증감요인을 보고 받고 대상처를 매월 기입하고 또 담당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기입하여야 한다.

5) 금광석 및 은광석은 제련된 금괴 및 은괴만을 조사한다.

예	품 목 번 호	품 목	규 격	단 위
	004	금	99.9 %	g
	005	은	99.9 %	kg

규산(珪酸) 질광석을 생산하여 자가제련하는 광산의 경우에 반드시 월별로 적요란에 "제련구분:자가제련"이라고 기입하고 생산량 및 출하량을 제품란에 기입한다.

유화질 금광석을 생산하고 생산된 원광석을 매광하는 광산의 경우에는 월별로 적요란에 매광처와 품위별로 매광량(원광석)을 기입 보고한다.

(6) 혼합 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단, 구분이 명확한 혼합광은 평균(표준)함유량에 따라 구분조사 하여야 한다.

(7) 석회석 조사시에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시멘트나 기타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원료로 재투입하는 전량을 "자가소비량"으로 기입한다.

(8) 수출광석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적요란에 매월 수출국명과 수출량을 기입한다.

예: 수출량 3,000ㄲ(미국 1,000, 일본 2,000ㄲ)

(9) 품목명 분류시 주의를 요하는 품목

(가) 백토는 고품토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나) 취수원은 물리브데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다) 흑연은 인상흑연과 토상흑연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10) 무 연 탄

무연탄의 재고는 산지재고, 역두재고, 소비지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업체의 재고라 함은 산지 또는 역두, 소비지재고를 불문하고 판매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한 그 사업체의 관리하에 있으면 소재지에 관계없이 이 사업체의 재고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비록 산지에 있는 재고라 할지라도 판매(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체 소유가 아니므로 출하로 간주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산업소분류 311 - 312 식료품제조업

(1) 농산물 통조림은 복숭아, 굴, 버섯 등 야채 및 과일 통조림을 포함 조사하여야 한다.

(2) 분유와 연유에 청정유 또는 시유(목장우유)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청정유라 함은 원유를 냉각시킨 다음 저유를 거쳐 여과시킨 것을 만하며 시유는 생우유를 살균처리한 원상 그대로의 우유이며 연유는 생우유를 탈수 농축시킨것으로 시유와 구별되며, 분유는 완전탈수시켜분말화된 것이다.

(3) 냉동 해산물에 냉장이나 빙장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냉동해산물은 일반적으로 -20℃이하의 저온으로 급냉각시켜 해산물자체를 얼게하여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며 냉장은 냉동을 시키지않

고 냉장창고에 보관되는 것이다.

빙장은 해산물과 얼음을 혼합하여 부패(변질)를 방지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원양어선에서 냉동시킨 것은 냉동해산물에서 제외되며 원양어선에서 냉동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하여 다시 냉동시킨 것은 포함 조사한다.

(4) 생선 및 해산물 통조림의 단위를 관(Can) 또는 상자 (C/S) 등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으로 조사 기입한다.

(5) 해산물통조림에 축산물통조림(쇠고기등)이나 농산물통조림(과일통조림등)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수산물통조림만을 조사한다.

(6) 식빵, 설탕과자의 단위는 %이다. 개 또는 봉지로 보고 하여서는 안되며 %으로 환산하여 조사 보고한다.

초코레트, 드롭프스, 카라멜, 제리, 캔디 등은 설탕과자에 포함시키나유과, 정과, 다식 등은 제외한다.

(7) 된장에 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춘장은 중화요리에 사용되는 검은 빛깔이다.

산업소분류 313 음료품제조업

(1) 소주나 탁주에 있어서는 동종류나 주종끼리 사업체를 통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통합된 사업체와 남아 있는 사업체(현재생산하는 사업체)를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탁주의 경우는 각 도시의 단위까지는 통합이 완료되었으니 합동관리위원회 산하에 포함된 사업체와 현재 생산중인 양조장을 구분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한다.

(2) 소주, 주정, 탁주, 청주, 사이다, 콜라의 지정 단위는 *kl*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되" 혹은 "병"으로 응답할 경우에는 이를 *kl*로 환산하여야 한다.

$$1 \text{ 되} = 1.8 \ell \quad 1 \text{ kl} = 556 \text{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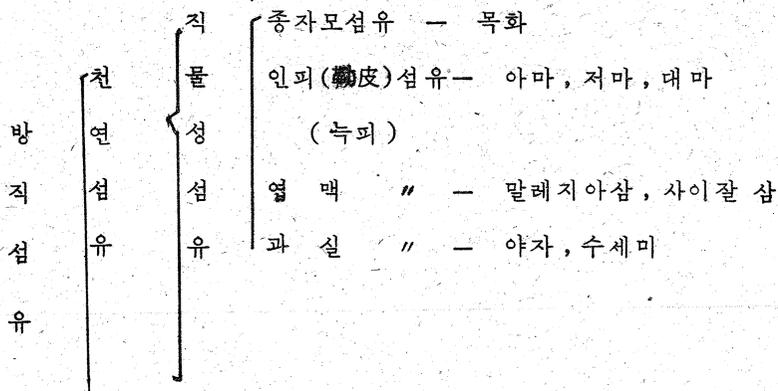
(3) 동일품목으로서의 품질규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은 합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입한다.

	품 목 명	규 격	단 위	생 산 량
13020 ×	소 주	25°	<i>kl</i>	200
13020	소 주	30°	<i>kl</i>	300
13020 ○	소 주	25~30°	<i>kl</i>	500

(4) 주스는 환타, 오란 C, 미린다, 씨니벤, 망과 C, 썬엿 등을 말하며 사이다, 콜라를 제외한 청량음료이다.

산업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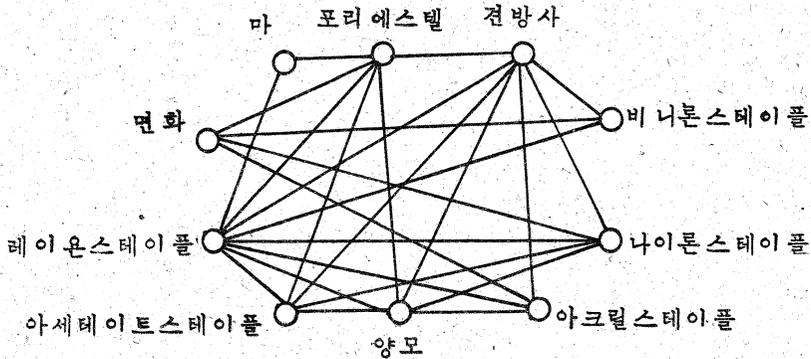
(1) 섬유분류



방 직 섬 유	동 물 섬 유	천 연 섬 유	수 사 - 양모, 염소털 (모헤어, 카시미아) 낙타털, 토끼털 등
			잠 사 - 가잠견사, 작잠사, 천잠사 등
			잠섬유 - 羽毛
			광물성 섬 유 { 석 면
	화 학 섬 유	재 성 섬 유 (펠프)	비스코스 레이온 (Viscos Rayon)
			큐프라 레이온 (Cuprammonium Rayon)
			우유단 섬유 (Fibrolane) (牛乳蛋)
			반합성섬유 (펠프) Semi-Synthetic fiber { 아세테이트 레이온 (Acetate rayon)
	또 는 인 조 섬 유	합 성 섬 유 (석유화학) Synthetic fiber	폴리아미드계섬유 (Polyamide fiber)
			폴리에스테르사계섬유 (Polyester fiber)
폴리비닐알코올계섬유 (Polyvinyl alcohol fiber)			
폴리아크릴계섬유 (Polyacrylic fiber)			
		폴리프로필렌계섬유 (Polypropylene fiber)	
		폴리에틸렌계섬유 (Polyethylene fiber)	

※ 폴리아미드계는 → 나일론, 폴리에스테르계는 → 테레틴 테트론, 폴리아 크릴계는 → 엑스란, 케시미론, 폴리비닐알코올계는 → 미클론, 비닐론이라는 상품명으로 사업체 및 일반에게 불리어지고 있음.

(2) 현재 각 섬유의 혼방되는 관계도표



특수제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혼방사는 상기도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때 혼방되는 섬유의 종류는 2종 이상인 경우도 많다.

(3) 혼방사 및 혼방직물의 기준량 비율(교직포함)

(가) 면과 화학섬유의 혼방

- ① 면과 1종의 타 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비율은 50 : 50으로 하되 동률인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 ② 면과 2종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하고 동률일 때는 동일량의 가격순서(합성섬유, 재생섬유, 면의 순)에 따라서 혼방합성섬유, 혼방재생섬유, 혼방면으로 호칭한다.

(나) 모와 화섬의 혼방

- ① 모와 화섬의 혼방일 경우 : 기준비율은 60 (화섬) : 40 (모) 로 하여 중량이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호칭하되, 기준비율일 때는 모를 우선적으로 택한다.

(예 : 혼방소모사·모혼방직물·혼방합성섬유방적사·혼방합성섬유직물 등)

- ② 모와 2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동일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재생섬유, 면 순에 따라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단, 모가 40% 미만일 경우에 한함.

(다) 견과 화섬의 혼방

- ① 견과 화섬 (합성섬유) 의 혼방일 경우 : 기준비율을 30 (견) : 70 (화섬) 으로 하여 중량이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호칭하되, 기준비율일때 견을 채택한다.

(예 : 견 혼방직물)

- ② 견과 2종 이상의 타화학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중량 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한다. 단, 견 3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③ 견과 모의 기준 혼방율은 40 (견) : 60 (모) 으로 하고 기준 비율일때는 견을 택한다.

(라) 2종의 화섬 혼방

등분율 (50:50) 이상을 점한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되 동일일 경우에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으로 호칭한다.

※ 혼방사 및 혼방직물 조사시는 조사표의 규격란에 혼방비율을 기

특할 것.

또한 사업체의 생산품을 어느 품목으로 채택하여야 좋을지 자신이 없을 때는 적요란에 원재료명과 혼방비율을 명기하고 견본을 조사표 후면에 첨부하여 보고할 것. 모든 혼방사 및 혼방직물(교직포함)은 상기요령에 의하여 구분하여 보고한다.

(4) 품목구분요령

- ① 생사 :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써 누에고치는 상견(上繭), 중견(中繭), 하견(下繭), 쌍견(雙繭), (王繭, 王고치)으로 대별되며 그 중 한 견으로 열탕처리(熱湯処理)하여 한가닥의 긴 필라멘트(Filament)식의 실을 뽑아 몇 가닥으로 합하여 만들어진 실.
- ② 면사 : 순면사 및 면혼방사 포함, 단, 면혼방사인 경우 다른 종류(質)의 섬유와 혼방되었을 때 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한과 반일 경우 한함(면 50%이상).
- ③ 방모사 : 방모사는 소모사와는 달리 그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가 많고 섬유의 길이도 길고 짧은것이 혼합되어 사용되며 제조공정도 카아딩만 거치기 때문에 잔털이 많고 유연한 특징을 가짐.
혼방방모사포함. 이때 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이상이어야 함.
- ④ 순소모사 : 비교적 잘 간추려진 섬유를 사용하며 가늘고 섬유가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어 모양이 매끄럽게 보이며 보풀이적고 균형된 굵기를 가짐. (all.wool)
- ⑤ 혼방소모사 : 각종섬유와 모(소모)가 혼방되어 만들어진 실로써 주로 대중을 이루는 것이 화섬이며 견과 그의 다른 섬유와 있음.

(혼방관계 : 혼방사 및 혼방직물의 기준량 비율참조)

- ⑥ 합성섬유방적사 : 섬유화학공정을 통하여 나프사를 원료로한 일체의 섬유를 말하며 여러종류가 있으나, 나이론, 폴리에스텔, 아크릴이 대중을 이루며 이 3종류가 합성섬유공정의 80% 이상 차지함. 즉 섬유로된 fiber 및 filament 등 일체의 화학섬유가 방직할 수 있도록 제공정한 사의 상태 이때 합성장섬유사 (filament) 도 직접 방직할 수 있으면 포함시킴.
- ⑦ 재생섬유방적사 : 셀룰로오스나 단백질등의 자연에 존재하는 고분자를 용해하여 이것을 노즐에서 밀어내어 섬유모양으로 고재생 (凝固再生) 한 것을 말하며 즉 Viscose staple fiber (원료 : 펄프 linter 등의 섬유질 S. f 면) 을 원재료로 한 방적사 및 Viscose filament (비스코스 인견사) 를 칭함.
- ⑧ 견방사 : 생사를 제조할 수 없는 부잡사 즉, 페니, 박견, 출각견, 찌거기고치, 생피쳐, 양견, 쉬은고치 등을 타면 (打綿) 하여 이것을 방적하여 실의 상태로 만든것. (수방사, 주방사, 견수방사포함) 단, 견연사 (견을 몇가닥으로 꼬아 놓은실) 는 제외된다.
- ⑨ 각종화학섬유연사 : 각종화학섬유차를 2단사 이상 꼬아 만든 실로써 합사 (몇가닥의 실을 합해놓은 실) 임. 면연사, 견연사 등은 제외되며 화학섬유에만 한함. 어망사와는 용도를 기준으로 분리한다.
- ⑩ 화섬사양말 : 단위는 필히 천족을 사용하고 순모, 순면 양말은 제외하며 화섬사 60% 이상의 혼방사 혼은 순화섬사로 된 양말은 포

함 한다.

특히 팬티스타킹 타이스는 스타킹으로 조사한다.

⑪ 메리야스위의 : 편물외의로서 세타류, 폴오버, 저지, 카디칸, T셔츠, 수영복, 체조복, 경기복, 슈트, 자켓 등을 말한다.

⑫ 아마사(亞麻絲) : 마사(麻絲)에는 아마(亞麻), 저마(芽麻), 황마(黃麻), 대마(大麻), 라마 등이 있으나 이중 아마(亞麻)를 재료로 하여 생산된 사만을 칭함.

참고 : 현재 대농 Co와 그 임직공장의 특점 품목임을 강조한다.

⑬ 면직물에는 광목(소창 포함), 내광목, 옥양목, 당목, 면범포, 포프린, 융, 면복지를 포함하여 면직물이라 기입한다.

⑭ 순소모직물 : 순소모사로 짠 직물, 고급지로서 : 신사복, 숙녀복에 사용한다.

⑮ 방모직물 : 순방모사나 혼방방모사로 짠 직물, 저급지로 모포, 겨울용오버, 홈스방에 사용한다.

⑯ 모혼방직물 : 혼방소모사로 짠 직물을 말한다. 교직일 경우에는 순소모사와 타섬유사로 짠 것도 포함한다.

⑰ 혼방합성섬유직물 : 2개 이상의 섬유가 혼방되어 제조된 직물중합성섬유가 50%이상 차지하였을 때를 말한다.

(단, 모와 혼방일때 60%이상 견과 혼방일때 70%이상)

(5) 자가사용량의 문제

이미 조사되고 있는 지정품목 중 다음의 품목은 타 제품 생산을 위한 재투입에 충당되는 비중이 크다.

이는 출하에서 분리하여 자가소비량으로 조사한다.

자가소비량을 조사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면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광목과 면복지를 동시에 생산할 때는 면사생산량중 외부에 출하되는 량과 광목과 면복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재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면사 → 광목, 당목, 포푸린, 면복지, 용등 일반면직물

순합성섬유사 → 순합성섬유직물

혼방합성섬유사 → 혼방합성섬유직물

순소모사 → 순소모직물

방모사(혼방방모사 포함) → 방모직물

혼방소모사 → 모혼방직물

생사·견방사 → 순본견직물, 견혼방직물

연사, 어망사(연승) → 어망, 로프

재생섬유사(인견사, 아세테이트사) → 재생섬유직물

특히 직물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자가소비량이 있는 경우 직물제품 및 의복류생산이 있으니 의복류만 빠짐없이 금액조사표에도 조사할것.

(6) 섬유제품중

지정단위가 m^2 로 되어 있는 품목을 업체사용단위 yde로 조사되고 있는데 규격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m^2 로 환산하고 규격란을 활용한다.

공식 : () yd <길이> × () 인치 <폭> × 0.0254 × 0.9144 =
() m^2

예 : 직물폭이 36 인치이며 길이 1dy는 $0.9144m \times 0.9144m$ 로 계산해서 $0.8361 m^2$ 가 된다.

(7) 지정품목중

사업체에서는 민수용, 관수용, 수출용을 분리하여 생각한다 하더라도 종합 조사하여 누락이 없도록 한다.

산업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신발제외)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구입한 직물을 가지고 재단 재봉한 모든 의류를 말한다. 즉 직물, 가죽, 모피 및 기타 재료를 절단하고 재봉하여 의복 및 모자 악세사리등을 만드는 사업을 말하며 금액조사함.

- (1) 재고액은 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의하며, 생산원가에 의한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장부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2) 수출업체는 계약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평가한다.
- (3) 적요란에는 증감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예 : Y 사쓰 수출증대 (태국)

아동복 외의 수출증가 (인도네시아)

남자용 양복 수출증가

세분류 3220 의복제조업

직물, 가죽, 모피 및 기타 재료를 절단하고 재봉하여 의복을 만들고 모자 및 의복악세사리등을 만드는 산업활동으로 이 항목의 중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외의, 내의, 모자, 모피옷, 악세사리, 장갑, 멜빵 및 관련제품, 잠옷, 비옷 및 기타 방수외의, 가죽옷, 양털안 반친 의복, 재료를 불문한 의복, 손수건, 학사복, 및 모자, 무대의상 등이다.

의복수선업은 9520 (세탁 및 염색업에 분류된다.)

32201 남자용양복제조업

일상사무 또는 공식사회행사에 입는 양복, 양복조끼, 코트 및 오버코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통적 또는 민족적인 의상, 작업복, 승마복, 별도의 하의, 가죽옷, 모피옷, 방수코트는 여기에서 제외되나 군, 경찰, 악단, 학생의 정복은 여기에 분류한다.

32202 남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외복제조업

드레스, 스포츠셔츠, 하의(반바지), 점퍼, 작업복, 내의, 잠옷, 여가복, 체육복, 경기제복등 남자용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되나 가죽 또는 모피장식 의복은 포함한다. 무대의상, 학사복, 비옷은 제외한다.

32203 여자외의 제조업

브라우스, 웨이스트, 셔츠, 양장, 스커트, 코트, 비치웨어, 수영복, 보온활동복, 체조복, 경기제복등 여자용 의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된다.

32204 소아용외의 제조업

소아용드레스 브라우스, 웨이스트, 셔츠, 코트양복, 반바지, 잠방이, 스커트, 스텍스, 비치웨어등 소아용 의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2205 여자용 및 소아용내의 제조업

여자, 소녀 및 소아용내의 잠옷 및 기타 몸을 받쳐주도록 설계된 의복제품을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의 주요제품에는 브래지어, 콜셋, 콜셋벨트, 콜세릿, 거들콜셋, 히프벨트, 임신후복띠, 캐미솔, 슈미스, 패티코트, 스립 잠옷, 팬티, 유아용턱받이 등이다.

완전히 고무로 만든 콜셋은 3559에 분류된다.

32206 가죽 및 모피의복제조업

성별에 관계없이 가죽, 구성가죽, 모피, 인조모피등으로 의복을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장갑, 타이, 머플러등 의복악세서리는 제외된다.

32207 모자 제조업

벨트, 얇은물질, 가죽, 모피, 직물, 깃등으로 남녀용 모자를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절모는 3819에 주형프라스틱모자는 3560에 운동경기용 보호모자는 3903에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죽 보호모자(소방관 헬멧)는 여기에 분류한다. 또한 모자장식물도 여기에 분류한다.

32208 장갑제조업

가죽, 구성가죽, 모피, 인조모피, 직물등으로 장식용, 방한용, 작업용의 장갑(완전편직제품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권투용 그로브는 3903에 분류한다.

32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복제조업

종교의식복, 무대의상복, 사롱, 한복, 학사복, 방수복 및 의복악세서리 즉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타이, 띠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메리야스외의나 메리야스내의는 물량조사품목이니 금액조사표에는 제외시켜야 하며 간혹 상기제품을 금액과 물량 2중으로 병행조사할 때가 있는데 차후 구분 조사하여야 함.

그리고 직물직품(커벤티감, 슈트, 베게포, 나프킨, 식탁보, 이불감, 세탁보, 스립카바, 자수물, 각종기)베낭, 천막은 금액조사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천막은 물량조사만 하여야함.

산업소분류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신발과 의복제조)

가) 우혁(牛革)을 제조과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수형(갑피혁) Chromed Upper

(용도) 고급구두 표면피혁 핸드백 등에 쓰인다.

(성질) 부드럽고 원피의 털이 붙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송아지의 것이 질이 좋다.

(2) 다리혁(Tanned Upper)

(용도) 군화용, 중창(구두), 가방

(성질) 두껍고 단단하며 원피의 털이 붙은 부분이다.

(3) 이혁(Sole)

(용도) 작업용 장갑

(성질) 원피에서 복수혁이나 다리혁을 떼어 내고난 안부분을 말하며 이혁을 만든 다음은 수구래(아교의 원료)가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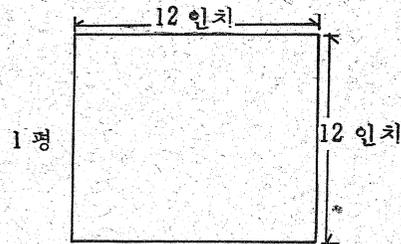
(4) 저혁

(용도) 창용·바깥·공업용 혁벨트

(성질) 특수 제조과정을 거친 생산원피의 털이 있는 부분, 복수
력 보다 저력이 비싸다.

※ 복수력과 저력을 합하여 우력으로 조사하며 군화등 타생산품을 만
들기 위하여 자가 소비가 있을 때는 출하와 구분하여 조사한다.
또한 사업체에서는 소가죽의 단위를 평(坪) 또는 매(枚)로 하여
생산량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정 단위는 천㎡이므
로 이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조사한다.

※ 단위환산법



사방 10 인치 = 0.0645 m^2

1 매 30 ~ 40 평

1 매 2.8 m^2 (30 평)

1 매 3.7 m^2 (40 평)

나) 비닐제 트렁크의 경우 그 규격이 다양하므로 용적이 792 입방인
치(보통 12 인치×11 인치×6 인치)이상의 크기만을 조사하여 학생
용책가방이나 서류가방은 제외한다. 또한 비닐 이외의 원재료 즉
직물제 등은 제외한다.

다) 핸드백에서 학생용 책가방이나 구슬백, 지갑등은 조사대상이 아니

며 또한 피혁이나 합성피혁·P·V·C이외의 원재료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24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신발제외)

- 가) 남자용 가죽신과 여자용 가죽신에서 소아용 가죽신은 제외하고 육군단화는 남자용 가죽신에 포함한다.
- 나) 군화 및 가죽장화는 목이 긴 군화와 장글화, 작업화, 등산화, 골프화, 가죽부츠 등을 포함 조사한다.

산업소분류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 (가구제외)

(1) 이 산업에 속하는 각재, 판재, 합판, 하드보드등 모든 제품의 지정단위는 m^2 인바 아직도 才, 매, B/F, S/F 등으로 조사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지정단위인 m^2 로 환산하여야 한다.

즉 $1\text{才} \approx 0.00334\text{ }m^2$ $1\text{ }m^2 \approx 300\text{ 才}$
 $1\text{ B/F} \approx 0.002359\text{ }m^2$ $1\text{ }m^2 = 423.77\text{ B/F}$
 합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환산한다.

규격			1 매 당 m^2	좌기 두께는 $1S \times F$ 당 m^2
가로 (F)	세로 (F)	두께 (mm)		
4	8	3.2	0.0095133	0.0002973
3	6		0.0053512	
4	8	3.6	0.0107024	0.0003345
3	6		0.0060201	
4	8	4	0.0111892	0.000372
3	6		0.006689	
4	8	6	0.017837	0.000557
3	6		0.010034	

(2) 소할재는 각재 및 판재에서 제외한다.

(소할재는 1본당 3才미만의 목재이다. 1才 = 1치 × 1치 × 12자)

(3) 제재목은 두께 2치이상과 2치미만으로 나누어지는데, 2치이상은 모두 각재로 조사하고, 2치미만중에서 너비가 두께의 3배이상일 경우에는 판재 3배미만일 경우에는 각재로 조사한다.

산업소분류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금속가구 제외)

(1) 연판품목을 유의하여 조사한다.

즉, 장농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경대를 또한 책상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의자를 대부분 제조하고 있으나 단일 품목만 조사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

(2) 판매업체는 원칙적으로 조사에서 제외되나 대부분 직영공장 또는납품처를 가지고 있으니 누락 사업체가 없도록 한다. (직영공장, 납품처를 색출할 것)

(3) 철제품과 목재품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4) 생산된 제품중 견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이나 자체내에서 사무용으로 사용한 것은 출하로 조사한다. 자가소비로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책상에서는 탁자, 티테이블 등은 조사에서 제외하며 학생용 책걸상은 규격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6) 탁자, 티테이블등은 식상에 포함한다.

산업소분류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 일반적으로 단위를 조사지침서에서 지정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예가 있는데 이점을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2) 골판지원지는 골판지상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라이너지(A원지, B원지 또는 K원지라고도 함)와 가운데의 입체구조의 매체가 되는 중심원지(S원지) 등을 골판지 원지라고 하므로 이들을 묶어서 조사하여야 한다.
- (3) 골판지 상자와 판지상자는 단위를 천[㎡]로 조사하여야 한다.
- (4) 창호지의 지정단위는 "권"이며 1권은 2,000매이다.
- (5) 판지를 마니라판지, 백판지, 회색판지 등 여러가지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구분하지 말고 이들을 총칭해서 판지로 조사한다.
- (6) 종이제품은 $500(1\text{연}) \times 1,091(\text{가로}) \times 0.788(\text{세로}) \times \text{종이의 중량} = \text{kg}$ 으로 환산한다.

산업소분류 342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 (1) 일간신문의 조사단위는 천부(千部)이므로 단위미만은 4사5입할 것이며 일일발행부수의 월간누계를 조사한다. (학생용시험용지는 일반인쇄물로 본다.)
- (2) 잡지, 정기간행물 및 비일간신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조사시에는 그 명칭을 비교란에 기입하여 보고한다.
- (3) 일반 인쇄물을 권이나 부수로 조사하고 있는 예도 있으나 지정단위는 연(連)이다. 그러므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재료 투입량으로 조사한다.
- (4) 출판(발행)업에 있어서 신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발행)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이므로 조사하여야

한다.

- (5)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등은 재고량이 있을 수 없으며 회사직원용등도 출하량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 (6) 일반인쇄소에서 주문에 따라 인쇄되는 신문, 잡지류는 조사하지 말고 일반 인쇄물만 조사한다.
- (7) 노트조사시 장부, 일기장, 회계장, 연습장 등은 제외하고 조사한다.
- (8) 앨범조사시 학교용 졸업앨범등 기념앨범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 (1) 황산(유산), 염산, 가성소다 조사시에는 지정도로 환산 기입하여야 한다.

① 황산은 98%, 35%, 40%등이 현재 생산되는데 98%로 환산해야 한다.

② 염산은 35%, 100%등이 생산되는데 35%로 환산한다.

③ 가성소다는 40%, 46%, 97%, 100%등이 생산되는데 100%로 환산해야 한다.

- (2) 암축산소의 단위는 본(병)이 아니고 m^3 이다.

$$1 \text{ 본} = 7 m^3$$

- (3) 아세치텐가스는 m^3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本), 또는 m^3 는 반드시 m^3 으로 환산해야 한다.

- (4) 호르마린은 합판 접착제로 대부분 소비되므로 합판 조사시에는 호르마린 생산여부도 확인 조사한다.

- (5) 스테아린산은 세탁비누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므로 세탁비누 조사시에

스테아린산도 조사한다.

(6) 염료는 각종 염료 (직접염료, 산성염료, 유호염료, 형광염료 등) 를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7) 실총제 실균제를 생산하는 사업체는 제조제도 생산하니 누락없이 조사하고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황산, 염산, 가성소다 등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시 생산여부를 확인한다.

(8) 나프사 분해공장에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치렌, 프로피렌, 부타디엔, 키씨렌, 싸이크로hex산 등이 생산되니 누락없이 조사한다.

(9) 폴리에틸렌은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있는데 구분하여 조사한다.

(10) 용성인비 조사시 용과린도 조사하며 용과린 제조시 사용하는 용성인비 반제품도 용성인비에 포함 조사한다.

(11) 화학섬유의 종류에는

① 재생섬유 — 비스코스

② 반합성섬유 — 아세테이트

③ 합성섬유 — 아크릴릭, 나이론,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PVA 등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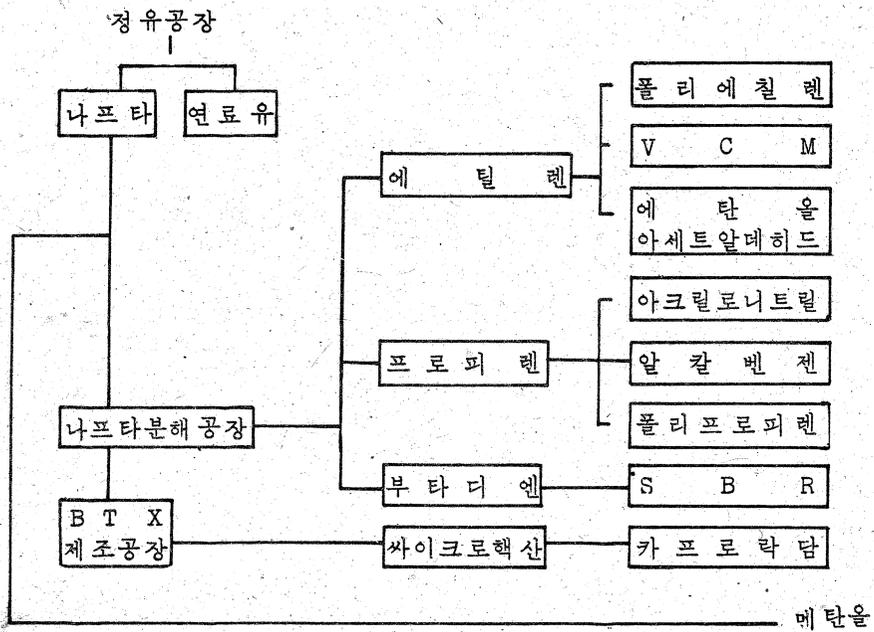
원재료로 화학펄프, 카프로락탐 (Caprolactam), 아크릴로니트릴 (A · N Monoma), PVA Powder, 에치렌그리콜 (EG)

Polypropylene Resin, DMT, TPA 등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서는 모든 화학섬유의 종류별로 S · F (Staplee fiber), Filament, Tow 로 구분 조사한다.

(12) 가소제에는 DOP, DOA, DBP 등 아주 많은 종류가 있으므로 전부 조사한다.

(13) 특히 공업용화학제품은 대부분의 품목이 자가소비량이 있으므로 조사시 이점을 유의하여 자가소비량조사에 누락없도록 한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계열도 참고



산업소분류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 (1) 의약품조사에 있어서 한 사업체에서 의약품이외의 품목(예, 화장품, 치약, 음료품(오란씨 등)을 병행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의약품만 금액조사하고 기타 품목은 물량 조사한다.
- (2) 의약품이 반송되었을 때 그것이 재출하 할것인지 폐기처분할 것인지 구분하여 폐기처분은 과부족보정량에 기입하고 재고액에서 제외한다.
- (3) 글리세린은 분리분해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비누공장 조사시에는 글리세린도 함께 누락없이 조사한다.
- (4) 분말세탁비누는 세탁비누에 포함하며 세탁용합성세제는 그 형태가 분말, 고형, 액체 모두 합산하여 조사한다.
- (5) 성냥은 가정용덕용기준(대형)으로 1,000갑이 1단위가 된다.

세분류 3522 의약품제조업(한국표준 산업분류 발체)

세균 및 바이러스 백신, 혈청 및 프라스마와 같은 생물학제품, 의료화학품 및 항생제, 키닌, 스트리킨, 설파제, 아편 및 유도체, 부신, 카페인, 코데인유도체, 비타민과 같은 생약제품 및 인간 또는 동물용 약조제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제조 및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221 생물학제품 제조업

항혈청, 세균백신, 특신 및 유사제품, 유기요법선과 선의 추출물, 피의 유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35222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품 제조업 항생제 제외

푸로비타민과 비타민 농축물 및 혼합물, 천연홀몬, 합성홀몬, 그리코시드 및 천연 또는 합성 알카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용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35223 항생제 제조업

페니시린 스트렙토마이신, 크로로테트라클린, 액티노마이신등과 같은 항생제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용으로 포장하는 활동은 35224 (약제품제조업)에 분류된다.

35224 약제품 제조업

수의약품을 포함해서 샘플,정맥술,연고,분,용액등 최종소비를 위하여 완성한 제제로서 사람 또는 농물의 내부 또는 외부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제조업으로서 한의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동식물 물질을 농축, 추출 및 가공하는 산업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소분류 353,354 석유 및 석탄제품의 잡제품

- (1) 석유의 1 Bb1 (바렐) = 158,984 ℓ로 환산.
- (2) 윤활유에는 구리스와 식물성윤활유는 제외한다.
- (3) 각종 연탄은 반드시 지정단위 %로 조사하여야 한다.

(예시) 22 공탄 277 개 = 1 %

25 공탄 208 개 = 1 %

31 공탄 180 개 = 1 %

49 공탄 80 개 = 1 %

또한 각종 연탄공장이 통합 단일공장으로 되어 있으니 통합된 사업체명부와 현재 남아있는 사업체 명부를 보고하여 업무지시에 따라 중

전인 사업체는 조사 중지한다.

산업소분류 355 고무제품제조업

- (1) 방한화는 외부 전체면적에서 고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면 장화에, 섬유부분의 비중이 크면 포화에 포함한다.
- (2) 운동화는 훈련화(통일화), 노동화, 일반운동화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 (3) 고무호스의 지정단위는 m 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권(卷)으로 보고 하더라도 m 로 환산하도록 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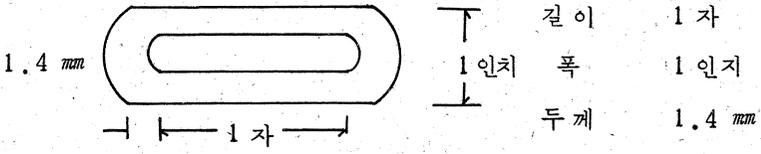
※ 1 권은 50 척(呎) = 15.15 m

- (4) 케미슈즈는 기타 플라스틱제품에서 조사한다.
- (5) 재생고무를 원료로 한 고무박킹 공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 (6) 스폰지는 천연 및 합성고무로 만든것만 조사하고 합성수지(P·V·C 등) 스폰지는 플라스틱제품으로 조사한다.
스폰지의 단위는 m^3 이므로 평이나 기타의 단위로 조사하였을 때는 m^3 로 환산하고 환산불가능할 때에는 규격을 기입한다.
일반적으로 스폰지 1평의 규격은 가로 1자 세로 1자 두께 10 mm 이며 이 때는 1,000 평이 1 m^3 이다.

- (7) 각종 고무벨트(V형 고무벨트, 평고무벨트, 콘베아벨트)의 지정단위는 천 Ply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척(尺) 또는 m 로 보고 하더라도 Ply로 환산하여야 한다.

$m / Ply = 폭(幅) \times 포층수(布層數) \times 길이$

1 Ply = 0.33 m / Ply



보통 고무벨트는 두께가 3겹 (1.4 × 3) 4겹, 5겹으로 되어 있다.
콘베아벨트는 보통 폭이 20인치이다.

산업소분류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 플라스틱제품을 세분하여 식기 및 용기류, 신, 필립, 호스 및 파이프, 테자로 구분 기입하고 끝난에 이들과 기타 제품을 합계하여 별도 기입 한다.
- (2) 운동화나 고무신제조업체에서 케미슈즈와 같은 플라스틱제 신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으니 조사에 누락이 없도록 할것.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제외)

- (1) 관유리는 2mm로 환산할 것. (단위 상자)
"에시" 규격 3mm, 200상자를 생산한 업체가 있다면 환산하여 규격 2mm, $3/2 \times 200 = 300$ 으로서
조사포에는 환산한 치수인 규격 2mm, 300상자로 조사하고 포장(상자)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환산하여 보고한다.
관유리 1상자 (Case) = 100 평 = 100 S/F (ft²) = 9.29 m²로 환산한다.
- (2) 벽돌 (소성품)은 각종 적벽돌 (赤)을 전부 포함하여야 하며 휘장연와 (오지벽돌)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소성벽돌 (적벽돌) 1매는 2kg 500g이니 무게로 나왔을시 1매 = 2.5kg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 (3) 홈판 스테트연통은 콘크리트판과 구분하여 조사 보고한다.
- (4) 소석회 조사시는 석회석 생산량도 동시에 조사해야 하며 석회질비

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5) 석면스레이트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두	께	가	로	세	로
소골스레이트	6	자	65 mm	720 mm	1820 mm	
(주택용)	7	자	〃	〃	2120 mm	
	8	자	〃	〃	2420 mm	
대골스레이트	6	자	〃	960 mm	1820 mm	
(공장·극장용)	7	자	〃	〃	2120 mm	
	8	자	〃	960 mm	2420 mm	
기와스레이트	6	mm		570 mm	1050 mm	
(농촌 개량지붕형)						
평 스테트	4.5	mm		910 mm	1820 mm	
(고급주택용)	6	mm		910 mm	1820 mm	
	6	mm		1,200 mm	2420 mm	

산업소분류 371 제 1 차철강산업

(1) 환강, 환철, 평강, 각강, 반원강 등은 모두 봉강에 포함한다. 강반성품에는 부름, 빌렛, 슬라브, 취트바, 대강, 핫코일등을 포함 조사한다. 단, 철근은 봉강에서 제외하여 구분 조사한다.

(2) 합금철

망강철(만암철), 규소철, 규소망강철, 크롬철, 몰리브덴철, 니켈철, 텅그스텐 스텐철등을 조사하고 비금속합금을 제외한다.

(3) Angle (凸형강), Channel (凹형강) 1-빔은 형강에 포함한다.

(4) 상수도관 구조관은 강관에 포함한다.

(5) 강관은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박 관 : 3 mm이하

중후관 : 3 mm이상

(6) 주철로 만든 이형관 Y등은 주철관에 포함한다.

(7) 가단주철이라 함은 가단성(可鍛性)(휘어질 수 있으나 잘 부러지지 않은)이 있는 쇠를 말하며 금속관 이음쇠, 방열기 등을 만드는 쇠를 말한다.

그러므로 가단주철을 생산하며 금속관 이음쇠를 만드는 경우에는 생산품목가 단주철과 금속관 이음쇠의 두가지가 되며 순수하게 출하된것만 각각 출하량에 기입한다.

(8) 기계용 주물(회주물)이라 하면 원칙적으로는 기계를 만들기 위하여 녹인쇠를 여러가지 형틀에 부어 만든 제품만을(기계의 원체) 조사하여야 하며 철제 가마솥은 알미늄 주물제품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알미늄 주물로 만든 제품은 알미늄주물제품으로 구분조사하여야 한다.

(9) 다음 품목등은 자가 소비량이 있으니 유의하여 출하량과 별도 구분 조사한다. 선철, 강반성품, 강괴, 나뭇선, 흑철선, 선재

(10) 흑철선도 마찬가지로 흑철선으로서 쇠못을 만들거나 아연을 입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가단주철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또한 흑철선은 경강선, P·C강선 아연도철선, 기타 흑철선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비철금속으로된 ACSR (알루미늄선) 진유선등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72 제 1 차비철금속산업

- (1) 알루미늄 주물제품과 프레스(압연) 제품이 가끔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루미늄피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껍지만 깨지는 성질의 것이며 프레스제품은 깨지기 보다는 찌그러지는 것으로 두께가 얇고 주로 노란칠을 한다. (알루미늄판으로 만들)
- (2) 나동선의 경우 일차제품으로 나동선을 만들어 케이블선, 합성수지피복면선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가소비량과 출하된량을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산업소분류 38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 (1) 금속제품 및 기계류 생산업체에서는 거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므로 생산품이 월별로 달라지는 사업체가 있으므로 기존 조사품목 외에도 조사대상품목이 생산되면 빠짐없이 조사한다.
- (2) 농업용 수공구에서는 금속제만 조사되며 (삽, 괭이, 호미, 쟁기, 쇠스랑등) 쟁기에 있어서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 벗과 보습을 한쌍으로하여 조사되어야 하며 곡괭이도 농업용 수공구에 포함한다.
- (3) 석유스토브 (난로)는 석유곤로와 분류되어야하고 스토브 (난로)만조사되며 곤로는 제외한다.
단, 사업체에서 완전 겸용으로 생산된 것 (반사형과 철사망이 부착된 것)은 스토브로 포함 조사한다.
- (4) 방열기 (라지에타)중에는 콘벡타, 월, 히터등 몇가지 종류가 있으나

모두 제외하고 순수한 라지에타(실내 스팀용)만을 "매"로 조사한다.

자동차용방열기는 구분조사한다.

(5) 알미늄프레스제품(식기 및 용기)과 알미늄제품(주물을 부어서 만든 것)은 구분 조사한다.

(6) 스테레스스틸제 식기에서는 한식기(밥그릇, 주전자, 신선로등)와 양식기(폭크, 스푼, 나이프등)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산업소분류 382 기계제조업(제기제외)

(1) 공업용 보일러, 발동기, 동력탈곡기 등 기계제조업에 있어서는 특히 수리와 생산을 엄밀히 구분 조사한다.

(2) 발동기는 석유 및 경유발동기만 조사한다.

(3) 디젤기관에는 농업용 디젤기관 디젤발동기까지 포함되나 수송용(선박용디젤기관과 자동차엔진)은 분리 조사되고 있으므로 경운기 부착용디젤엔진과 디젤발동기 등은 디젤기관으로 조사한다.

(4) 인력탈곡기는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 분무기는 농업용 등짐식 어깨거리형(배낭형)자동 및 수동분무기와 족담형 등 농업용을 조사하여 곤충(파리, 모기)을 제거하기 위한 소형분무기(가정용펌프), 페인트용, 세탁소에서 사용하는것 스프리전 등은 제외한다.

(6) 절삭공구 조사시는 공구의 명칭을 세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쇠틱틀줄 등은 공장용 수공구로 조사하고 쇠틱날과 유리칼 혹은 목공용칼날은 제외한다.

- (7) 선반, 압출기, 프레스기는 수리품과 생산완제품을 구분 조사하고 적요란에 용도, 모양, 규격 등을 기입토록 한다.
- (8) 종광과 샷틀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 (9) 정미기 및 정맥기에는 현미기, 제분기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10) 활판인쇄와 옵셀인쇄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11) 동력펌프에는 자동식 펌프와 양수기(수리관계용)를 포함 조사하며 수동식 펌프(우물용)는 제외한다.
- (12) 재봉틀 조사시는 다이까지 포함된 완제품을 원칙으로 하나 재봉틀 두(미싱수)만 생산하더라도 완제품으로 간주 조사한다.
- (13) 발브는 건축용 기계용 공업용만 포함 조사하고 자동차 부속용(발브가이드) 엔진발브, 타이어 튜브발브 및 수도꼭지는 제외된다.
- (14) 베어링은 볼베어링, 롤베어링, 스피드베어링 등 전부를 포함하며 자동차용 메탈베어링, 엔진베어링, 유니버살 조인트 등은 구분조사하여야 한다.
- (15) 기어(톱니바퀴)는 순수한 톱니바퀴만 조사하고 완제품으로서의 자동차 제동장치인 기어는 제외한다.
- (16) 압연기롤에서 칠드롤이나 철강 압연롤은 조사하여야 하나 곡물분쇄용 고무롤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8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1) 전동기: 전력을 입력으로해서 출력을 기계적 에너지를 뱉는 전기모터를 말하며 조사지정단위는 IP이나 1마력이하 및 대로 조사될

때는 전체 생산대수를 IP으로 환산 기재 조사한다.

- (2) 변압기 : 전력을 일정하게 하고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로 조사지정 단위는 KVA이며 대(台)로 조사될때는 KVA로 환산조사 한다.
- (3) 축전기 : 고압축전기는 조사 지정단위가 KVA이고 저압축전기는 mF이다.
- (4) TV수상기 : 흑백TV, 칼라TV로 구분하고 규격란에 그 크기(인치수)를 명시 조사한다.
- (5) 라디오수신기 : 카(CAR)라디오와 일반라디오로 구분조사
 ※ 카스테레오 : 가. 녹음재생만되고 녹음불가 라디오 미 부착은 대상외나. 녹음불가 라디오 부착은 카라디오로 조사
- (6) 확성기 : 전기적신호를 음향으로 변환하는 기능의 전자부품으로 TV, 라디오, 전축, 스피커등을 조사한다.
- (7) 앰프 : 특히 전축과 구분조사할 것. (앰프만 별도출하되는 것)
 ※ 앰프 10대 생산하여 전축조립 3대 별도출하 6대일 경우 :

품 목 명	단 위	생산량	자가소비량	출하량	월말재고
앰 프	대	10	3	6	1

- (8) 전화교환기 : 교환취급자에 의해서 조작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동식(PABX)과 수동식(PBX)로 구분조사되며, 자동식전화

교환기의 조사지정 단위는 "회선"이고 수동식전화 교환기는 "대"이다.

(9) 집적회로(IC): 1 - 2 mm각의 실리콘 결정가운데에 TR 다이오드, 저항 콘덴서등의 코일부품을 접속도선을 사용하지 않고 승착시켜 이루어진 회로로 조사지정 단위는 "천개"이다.

(10) TR : 소형라디오가 아니며 3 극이상의 진공관과 동일한 작용을 갖는 반도체 부품으로 전류증가 소자이며 재료에 따라:

(1) 겔마늄 다이오드 (2) 실리콘 다이오드로 대별된다.

(11) 콘덴서는 고정콘덴서 (전해콘덴서, 세라믹콘덴서, 플라스틱콘덴서, 오일콘덴서, MP콘덴서, Mica (운모)콘덴서등)와 가변콘덴서로 구분하여 조사 하고 조사단위는 천개로 한다. (M/F로 조사하지 말 것)

산업소분류 384 운수장비 제조업

(1) 철강화물선 목조어선 등의 수리품은 조사에서 제외되며 철강화물선철 강유조선, 철강어선은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며 냉동선, 부실토운선등 철 강선박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2) 자동차스프링은 의자(시트)용 스프링은 제외되며 차체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을 조사하되 코일형 스프링과 중판스프링으로 구분조사한다.

산업소분류 385 달리분류되지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

390 기 타 제 조 업

(1) 손목시계, 패중시계, 손목시계케이스, 탁상시계등을 각각 구분 조사한다. 단, 특수형시계(잠수기록용), 전기전자시계(옥외설치용)는 조사에서 제외

외하고 전자손목시계와 손목시계는 구분하여 조사함. 전자벽시계는 패
종시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2) 짚퍼(작크)는 단위가 사업체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km*로 환
산한다. 단위환산이 곤란할때는 원재료 사용량으로 환산함을 참고한
다.

고용 및 급여

- (1) 임시 종업원은 생산종사원, 사무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토록할것.
또는 자영업주나 무급가족종사는 기입에 착오없도록 할것.
- (2) 월중 연근무인원수는 일일종업원수의 누계인데 일반적으로 월말 종
업원 수에다가 조업일수를 곱해주고 있는데 이는 편법이므로 인사및
경리취급 담당에게 구체적으로 협조를 구하여 실제 연근무인원수를 조
사토록 한다.
- (3) 고용 및 급여액에 차가 있을 경우 변동요인을 비교란에 기입하는
데 추석보너스, 김장보너스, 기별보너스, 정기급여인상, 능률급 지급 등
을 기입한다.

원재료, 연료 및 전력

- (1) 원재료 조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원재료명의 해설에관
한 별도의 설명이 없는한 제품조사의 그것에 준하여 조사한다.
- (2) 면사 : 순면사, 면혼방사를 포함.
- (3) 소모사 : 순소모사, 혼방소모사를 포함.
- (4) 화학섬유사 : 합성섬유사와 재생섬유사로 구분조사하고, 합성섬유사는 합
성섬유 방적사, 혼방합성섬유 방적사, 합성섬유연사를 포

합하고, 재생섬유방사는 아세테이트사(반합성섬유사), 재생
섬유방적사, 혼방재생섬유방적사, 재생섬유 연사를 포함한다.

※ 상기품목 외에도 모든 絲는 혼방된 것도 포함조사하며, 연사도포
함한다.

- (5) 면직물 : 순면직물만 조사
- (6) 화학섬유직물 : 재생섬유직물, 합성섬유직물을 분리하여 조사
- (7) 혼방직물 : 면혼방직물, 모혼방직물, 혼방합성직물, 혼방재생직물, 혼방견
직물을 각각 분리하여 조사한다.
- (8) 특수강 : 철강은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구분되며, 탄소강중에서 고탄소
강, 합금강 중에서 고합금강을 특수강으로 조사한다.
용도별로는 탄소공구강, 고속도강, 내열내식강 등을 말하며 각종절삭공
구베어링, 스프링과 같은 기계의 특수품목, 그리고 피아노선, 용접봉심
선, 차석등에 사용된다.
단, 합금강 중의 저합금강은 저탄소강과 같이 특수강에서 제외하며,
특수강으로 취급되는 고합금강이라도 규소강판, 스테인레스판과 같이별
도로 조사되고 있는 품목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 (9) 황동 : 황동은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동과 아연 합금이다.
일명 놋쇠 또는 진유라고도 하며 괴(塊), 판(板), 봉(棒)을 포
함하여 조사한다.
- (10) 알미늄박 (0.2 mm미만) : 알미늄박은 제 1 차 비철 금속제품의 알미늄박
판을 말한다.
- (11) 알미늄판 (0.2 mm이상) : 알미늄박은 제외한다.

- (12) 인칭동판 : 동에 인과 주석을 입힌 합금판으로 인 (10 - 15 %) 과 주석 (3 - 7 %) 이 합금된 철판.
- (13) 비철금속 제품중 동, 알미늄, 아연 등이 서로 합금된 것은 함유량이 가장 큰 제품속에 포함시킨다.
- (14) P . C . B 원판 (Printed Circuit Board) : 트랜지스트나, T . V 등에 사용되는 회로판으로 표면은 동으로 도금되어 있으며 어 - 스 (earth) 역할을 한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규격은 $1 m \times 1 m$ 인것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15) 강반성품은 스투브, 비엣트, 쉬트바 (Sheetbar), 브롬을 포함조사하고 열연대강 (핫코일) 과 냉연대강을 각각 분리하여 조사한다.
- (16) 무연탄, 원료탄 (유연탄), 경유, 중유, B - C 유, 코크스의 사용량중연료로 사용한량은 연료난에 원재료로 사용한량은 원재료란에 기입한다.
- (17) 전력의 자가 발전량은 자가 생산량란에 기입한다.

부록Ⅱ. 광공업 동태 조사 지정 품목 분류

- (1) 이 분류표에는 조사대상이 되는 품목을 산업소분류별로 게재하고 있다.
- (2) 이 분류표의 단위란에 두 가지 단위 (,)로 기입된 품목은 반드시 두가지 단위에 따라서 병행 조사 보고해야 한다.
- (3) 그 사업체가 소속하는 산업소분류의 대상 품목 전부를 검토하여 그 사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해당되는 품목을 골라야 한다.
- (4) 그 사업체의 주요 제품을 이 분류표에서 발견하지 못하거나 (중전과는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음) 또는 이 분류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가는 불분명할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대로 기입하되 그 명칭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예 : 가정용 전기세탁기라 기입하는 것은 좋으나 이를 가정용 전기 기계와 같이 기입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
- (5) 두 개 이상의 품목을 한란에 결합하여 기입하여서는 안 된다.
(예 : 간장과 된장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이들을 각각 다른 란에 기입한다.
「간장 및 된장」이라 하여 한란에 기입하면 안 된다.)
- (6) 플라스틱 제품 (56010)은 %으로 조사하고 동시에 식기 및 용기 (56011) , %), 신발 (56012 , %), 필립 (56013 , %), 파이프 및 관 (56014 , %), 레저 (56015, %)으로 구분 조사한다.

(7) 이 분류표의 단위란에 사용된 약호는 다음과 같다.

g : 그램 (gram)

kg : 킬로그램 (= 1,000 g)

M_t : 메트릭 톤 (= 1,000 kg)

S/T : 쇼트 톤 (= 907 kg)

HP : 마력

G/A : 갤론 (gallon)

m : 미터 (meter)

m^2 : 평방미터 (가로와 세로가 각 1 m 인 넓이)

m^3 : 입방미터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 m 인 부피)

S/F : 스퀘어 휘트 (Square feet)

ℓ : 리터 (liter)

$k\ell$: 킬로리터 (= 1,000 ℓ)

G/T : 그로스 톤 (용적 톤 $100f^3 = 1 G / T$)

KVA : 키로볼트암페어 (Kilo Volt Ampere)

mf : 마이크로 파라드 (micro farad)

가. 광공업동태조사 지정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질 및 규격
2. 광 업			
중분류 21. 석탄광업			
210. 석탄광업			
01010☆	무 연 탄	㎏	청청하고 크기도 고르고 선별한 것 (접착제 없이 응집한 것은 포함하나, 접착제로 만든 것은 제외) (기준열량 4800-5000 Cal)
중분류 23. 금속광업			
230. 금속광업			
03010	철 광 석	㎏	Fe 56 % (석철광, 자철광, 갈철광, 기타철광)
03020	중 석 광 석	㎏	Wo: 70 % (흑중석, 회중석, 기타중석)
03030	금 광 석 (금괴)	g	Au 99.9 % 금괴
03040	은 광 석 (은괴)	kg	Ag 99.9 % 은괴
03050	동 광 석	㎏	Cu 15 % (회동광, 황동광, 반동광, 남동광, 공작석등) 이며 동매트 (Copper Matt)는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03060	연 광 석	%	제외 Pb 50 % (방연광, 백연광, 황산연광, 기타연광)
03070	아 연 광 석	%	Zn 50 % (섬아연광, 홍아연광, 탄산아연광)
03080	몰 리 브 데 늬 광 석	kg	MoS ₂ 90 % (취수연포함)
중분류 29. 기타광업			
290. 기타광업			
09010 ☆	석 회 석	%	CaO 50 %
09020	모 래	m ³	건설용 및 산업용모래 (금속함유 모래는 제외)
09030 ☆	자 갈	m ³	
09040 ☆	고 령 토	%	SK # 34 (백토포함)
09050 ☆	납 석	%	SK # 32 (실화석고의 일종으로 조각용 연성왁스질의 광물)
09060	형 석	%	CaF ₂ 80 % (천연방정석, 치오라이트 (Chiolite) 포함)
09070	인 상 후 연	%	FC 75 %
09080	토 상 후 연	%	FC 75 %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09090	활 석	㎏	기준품위 없으며 각급으로 조사
09109	장 석	㎏	기준품위 없으며 각급으로 조사. (화성암의 주된 성분으로서 규산 및 알루미늄, 나트륨, 칼슘, 칼륨등으로 이루어짐)
09119	규 석	㎏	SiO ₂ 99.5 % (규사 SiO ₂ 95 포함조사)
09129	석 면	㎏	기준품위 없으며 각급으로 조사 (사문석 또는 각섬석등이 분해되어 섬유질로 변한 것)
<p>제 조 업</p> <p>중분류 31. 식료품 및 담배</p> <p>제조업</p> <p>311-312 . 식료품제조업</p>			
11010	쏘 세 지	㎏	육류와 소맥분 등을 주원료로 한 것으로 오징어나 어묵, 햄, 베이컨 등은 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11020	연 유	kg	제외한다. 청정유 및 시유제외
11030	분 유	M ³	몰트우유 포함 (청정유 및 시유제외)
11040	아 이 스 크 림	kl	하드류 제외
11050 ☆	차 리 우 유	M ³	시유 (목장우유) 를 말한다. (비타민 미네랄염 등이 첨가된 것 포함)
11060	유 산 균 발 효 유	M ³	과일즙이 첨가된 것도 포함
11070 ☆	농 산 물 통 조 림	M ³	벡타류 포함
11080 ☆	해 산 물 통 조 림	M ³	꽂치, 고등어, 연어, 조개 등 수산물통조림
11090 ☆	냉 동 해 산 물	M ³	(빙장, 냉장 및 원양어선에 서 제조된 냉동물 제외)
11100	대 두 유	kl	
11110	마 아 가 린	M ³	
11120	쇼 팅	M ³	
11130	밀 쌀	M ³	
11140	밀 가 루	M ³	관, 민수용 포함조사
11150 ☆	식 빵	M ³	밀가루빵, 그루레빵, 옥수수빵,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 질 및 규 격
11160 ☆	전 빵	kg	백아빵 등 각종 빵 (생과자, 케이크, 파이 등 제외)
11170 ☆	전 과 자	ㄱ	밀가루와 설탕을 주원료로 하여 구운 과자임. (비스킷이라고도 하며 쿠키, 크래카, 웨 퍼어스 등이 포함됨)
11180	라 면	ㄱ	
11190	정 당	ㄱ	
11200	설탕 과 자	ㄱ	설탕, 물엿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시킨 것. 초콜리트, 캔디, 캐러멜, 드롭프스, 젤리 등의 양과자를 조사하되, 유과, 다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과자는 제외
11210	검	ㄱ	
11220 ☆	인 조 열 음	ㄱ	
11230 ☆	간 장	kl	
11240	글 루 타 민 산 소 다	ㄱ	
11250 ☆	녹말가루 (전분)	ㄱ	옥수수, 밀, 쌀, 감자, 마니옥,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11260	식 용 포 도 당	㎥	희뿌리 등에서 추출된 녹말 가루로서, 반제품인 수전분 제 외
11270 ☆	물	㎥	단위는 ㎥로 환산할 것 (엿 제외)
11280	분 말 커피	kg	분말커피, 레콜러커피, 원두커피 모두 포함 조사
11290 ☆	분 말 인 삼	kg	
11300	이 스탁트	kg	생이스트 드라이이스트 포함
11310 ☆	배 합 사 료	㎥	배합사료의 원료(밀기울, 대 두박 등)만은 조사하지 않 으며, 반드시 배합된 사료를 조사한다. 화학사료는 제외한 다.
11329	베 이 콘 · 햄	kg	소세지 제외
11339	빙	kg	아이스크림 제외
11349	채 종 유	ℓ	채유라고도하며 옥배유, 대두유 등은 제외
11359	카 레 가 루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11369	마 요 네 즈	kg	
11379	식 초	ℓ	
11389	과 당	kg	포도당 제외
11399	식 용 사 카 린	"	
11409	보 조 사 료	M/T	영양균형 또는 필요한 용도에 따라 한가지 영양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만든사료
11419	축 산 물 통 조 림	kg	
11429	된 장	M/T	
11439 ☆	인 공 감 미 료	kg	
313. 음료품제조업			
13010	주	정	kl
13020	소	주	kl
13030 ☆	탁	주	kl
13040	청	주	kl
13050	포 도	주	kl
13060	맥	주	kl
13070	사 이	다	kl
13080	콜	라	kl
			합성청주 포함
			디저어트포도주, 탄산포도주, 향미포도주 포함
			합성맥주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13090	주 스	kl	순수한 과일즙 음료와 플레 버음료 포함 조사 (분말주스 는 제외)
13109	인 삼 주	kl	
13119	교 량 주	"	
13129	국 산 양 주	kl	알콜분 함유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즉, 증류주의일종) 으로서 위스키, 브랜디, 꼬냑 등이다.
13139	기 타 재 제 주	kl	주류의 1종 또는 기타증료 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 서 진, 보드카, 샴페인, 오가피 주 등이다.
13149	누 룩	kg	
13159	엿 기 림 (맥 아)	ㄱ	

314. 담배 제조업

14010	필 터 날 린 담 배	백만본
14020	필 터 없 는 담 배	백만본
14030	각 연	ㄱ
14049	재 건 조 앞 담 배	ㄱ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321. 섬유제조업			
21010☆	생 사	kg	옥사포함
21020	면 사	kg	면혼방사 포함
21030	방 모 사	kg	수모방적사 제외
21040	순 소 모 사	kg	수모사 제외
21050	혼 방 소 모 사	kg	
21060☆	합 성 섬유 방 적 사	kg	방적사 Stretch (스트레치) 사, Filament (필라멘트) 사, (폴리에스틸사, 나일론사, 데포 린울직사, 카시미론사, 아크리릭 사 등의 합성섬유사) 단, Fiber 는 제외
21070	재 생 섬유 방 적 사	kg	
21071	기 타 재 생 섬유 방 적 사	kg	아세테이트사 제외 혼방재 생 섬유 방 적 사 제외
21072	아 세 테 이 트 사	kg	혼방아세테이트사 제외
21080☆	혼 방 합 성 섬유 방 적 사	kg	모와의 혼방은 : 60 (합성) : 40 (모) 견과의 혼방은 : 70 (합성) : 30 (견)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21090 ☆	전 방 사	kg	<p>재생섬유와의 혼방은 : 50(합성) : 50(재생)</p> <p>면과의 혼방도 50:50 임.</p> <p>합성섬유가 상기 비율 이상을 차지한 경우에 혼방합성섬유방적사가 됨.</p> <p>전방적사, 견수방사, 주방사 포함</p> <p>견혼방사 포함</p>
21100 ☆	화 학 섬 유 연 사	kg	<p>재봉사, 편물사중 화학섬유연사 (혹견연사, 연신사, 의장연사 포함)</p>
21110	담 요	m ²	
21120 ☆	타 울	kg	<p>위생용타울, 세면타울, 목욕타울, 해수욕타울 포함</p>
21130 ☆	화 석 사 양 말	천켈레	<p>화석 60%이상 양말, 팬티스타킹, 타이스 포함 (순면, 순모 양말 제외)</p>
21131	스 타 킹	천켈레	
21132	인 조 섬 유 양 말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21140 ☆	메 리 야 스 내 의	천 매	동내의 포함
21150 ☆	메 리 야 스 외 의	"	편물외의 수편 또는 편직물 로된 웨타류 포함.
21160 ☆	로 우 프	M _g	
21170 ☆	어 망 사 (연승)	kg	연승이라고도 하며 반드시 연사한 것을 포함 연사하지 않은 어망 사용실 계의
21180 ☆	어 망	M _g	
21190 ☆	면 직 물	천 m ²	면혼방직물 제외
21200	순 소 모 직 물	천 m ²	all Wool 로 된 소모직물
21210	방 모 직 물	m ²	방모사로 짠 직물
21220	모 혼 방 직 물	천 m ²	
21230 ☆	순 본 견 직 물	m ²	홀치기원단, 시보리원단, 하오 리원단, 쓰무기원단, 양단 등 포함.
21240 ☆	견 혼 방 직 물	m ²	견방사 및 생사와 타섬유사 가 혼방되어 짠 직물을 말 함. 이 때 견(생사) 30 % 이상이어야 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21250 ☆	순 합 성 섬 유 직 물	천 m^2	나이론, 다후다, Jersey (저지), 양고라, 폴리텍스, 케미칼, 트리코트라고 일반적으로 호칭됨.
21260 ☆	혼 방 합 성 섬 유 직 물	천 m^2	
21270 ☆	재 생 섬 유 직 물	"	인견양단이라고도 함.
21280	필 터	kg	혼방재생섬유직물은 제외함.
21290	타 이 어 코 드 사	$M\%$	※ 모든 타섬유제통의 파일 및 셔닐직물은 해당 직물에 포함해서 조사해야 하나, 재생섬유에서는 제외하여야 함.
21309	면 연 사	kg	
21319	견 연 사	"	
21329	천 막	매	소형, 대형천막, 방수포, 텐트포함 25 m^2 를 1 매로 환산하여 조사
21339	면 양 말	천킬레	
21349	모 양 말	"	
21359	면 편 직 물	kg	
21369	인 조 섬 유 편 직 물	"	
21379	카 펫 트	m^2	
21389	인 조 섬 유 타 이 어 직 물	$M\%$	
21399	아 마 사	kg	

322. 의복제조업 (신발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22010☆	의 복 류	백만원	
22011	남 자 용 양 복	백만원	
22012	남자용셔츠,작업복	"	
22013	여 자 의 의	"	
22014	소 아 용 의 의	"	
22015	여자용및소아용내의	"	
22016	가 죽 및 모 피	"	
22017	모 자	"	
22018	장 갑	"	
22019	달리분류되지않는의복	"	종교의식복, 무대의상복, 사롱 한복, 손수건, 스카프, 머플러, 타이, 띠등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외)			
23010☆	소 가 죽	천 m ²	
23020☆	비닐제트렁크(가죽포함)	개	피혁, 합성피혁, P.V.C로 만 든 제품만 조사
23030☆	핸 드 백	천 개	피혁, 합성피혁 P.V.C로 만 든 제품만 조사 (학생용, 여행용 가방,구슬백 은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23049	재 생 가 죽 및 인 조 가 죽	m ²	비닐레처는 제외
23059	기 계 용 가 죽 벨 트	m/Ply	
324.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플라스틱신발 제외)			
24010 ☆	남 자 용 가 죽 신	켈 레	소아용 가죽신 제외 (군용 단화 포함)
24020 ☆	여 자 용 가 죽 신	켈 레	소아용 가죽신 제외
24030 ☆	군 화 및 가 죽 장 화	켈 레	가죽으로 된 목이 긴 신, 장글화, 작업화, 등산화, 골프화, 가죽부츠 등을 포함
중분류 33.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 포함)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			
체 조 업 (가구 제외)			
31010 ☆	각 재	m ³	소할제 제외
31020 ☆	판 재	m ³	소할제 제외
31030 ☆	장 지 문	개	건축시에 소요되는 각종 목재 문짝을 말함. 규격은 보통 가로 2~4 자, 세로 5~6 자 이상의 것을 조사하되 대문은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1040 ☆	합 판	m ²	
31050	재 생 목 재	m ²	파이버우드 (인슐레이션·보 우드, 하드보우드) 와 파티 클보우드 (칩보우드) 등 식 물성 섬유나 목재의 조그 만 파편을 접착하여 성형 시킨 것
31069	소 할 재	m ²	각재, 판재는 제외 (각재판 재는 두께가 2치 (8cm) 이상임.
31079	칩 목 본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금속가구제외)			
32010 ☆	장 농	개	순수한 장농만을 조사 (찬장 및 대형서가 제외)
32020 ☆	식 탁 (상포함)	개	
32030 ☆	화 장 대	개	
32040 ☆	의 자	개	소파는 조사에서 제외
32050 ☆	책 상	개	탁자, 티데이블 제외
32069	침 대	개	철재침대는 제외
32079	장 식 장	개	장농, 부엌용찬장은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2089	소 파	개	벤치는 제외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41010	쇄 목 필 프	ㄱ	
41020	화 학 필 프	ㄱ	
41030	신 문 용 지	ㄱ	
41040	백 상 지 (모조지)	ㄱ	
41050☆	중 질 지	ㄱ	갱지, 그라비아용지, 로루지 등 각종 인쇄 및 필기용 지
41060	아 트 지	ㄱ	
41070☆	크 라 프 트 지	ㄱ	
41080☆	갈 포 벽 지	천 ㎡	
41090☆	창 호 지	권 (2,000매)	
41100	화 장 지	ㄱ	
41110	박 엽 지	ㄱ	
41120☆	판 지	ㄱ	
41130☆	골 판 지	ㄱ	라이나원지 (A.B.K원지) 중심원지 포함
41140☆	골 판 지 상 자	천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41150	크 라 프 트 지 대	천 매	시멘트, 밀가루, 설탕포대, 사료 등의 종이포대
41160☆	관 지 상 자	천 m ²	접어서 만든 관지상자와 짜 맞추는 관지상자
41170☆	벽 지	천 m ²	링크러스타 (lincrusta) 포함
41180	금 속 박 지	M/	
41190	권 연 지	M/	
41209	인 화 지	kg	
41219	장 판 지	m ²	

3 4 2 .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42010 ☆	일 간 신 문	천 부	
42020 ☆	비 일 간 신 문	"	
42030 ☆	정 기 간 행 물	천 권	
42040 ☆	서 적	"	
42050 ☆	노 트	"	장부, 일기장, 회계장, 연습장 등 제외
42060 ☆	앨 범	천 권	졸업앨범 등의 사진인쇄 앨범 제외
42070 ☆	일 반 인 쇄 물	연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중분류 35. 화학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351. 산업용화학물제조업			
51010	에 티 렌	㎏	
51020	프 로 피 렌	㎏	
51030	부 타 디 엔	㎏	
51040	짜 이 크 로 핵 산	㎏	
51050	벤 젠	㎏	
51060	토 루 엔	㎏	
51070	키 시 렌	㎏	
51080	V C M	㎏	염화비닐모너머
51090	메 타 놀	㎏	나무나프타 (조메틸알콜) 는 제외
51100	호 루 마 린	㎏	포름알데이드
51110	스 테 아 린 산	㎏	
51120	무 스 프 탈 산	㎏	
51130	아 크 릴 로 니 트 릴	㎏	아크릴로니트릴콜리퍼 및 코플리퍼는 제외
51140	카 프 로 락 탐	㎏	
51150	염 산	㎏	35 %로 환산할 것
51160	황 산	㎏	98 %로 환산할 것. 발열 황산인 올레움 (oleum)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51170	가 성 소 다	℥	포함 100%로 환산할 것.
51180	소 다 회	℥	탄산나트륨 무수탄산소다
51190	산 화 티 타 늑	℥	
51200	암 모 니 아	℥	
51210	카 바 이 트	℥	탄화칼슘
51220 ☆	압 축 산 소	천 #	
51230 ☆	아 세 칠 렌 개 스	℥	
51240 ☆	염 료	℥	
51250	유 안 비 료	℥	
51260	요 소 비 료	℥	
51270	용 성 인 비	℥	
51280	용 과 린	℥	
51290	복 합 비 료	℥	규산질비료제의
51300	살 충 제	℥	
51310	살 균 제	℥	
51320	제 초 제	℥	
51330	S B R	℥	NBR 제의
51340	요 소 수 지	℥	
51350	플 리 에 칠 렌 (P·E)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51360	폴 리 프 로 피 렌 (P . P)	㎏	
51370	폴 리 스티 렌 (P . S)	㎏	
51380	P V C	㎏	
51390	세 로 판 지	㎏	
51400	아 세 테 이 트 섬유	㎏	아세테이트 TOW 포함
51410	나 이 론 섬유	㎏	나이론 Staple Fiber 포함 나이론 Staple Top 포함
51420	폴 리 에 스티 러 섬유	㎏	폴리에스테릴 Staple Fiber 포함 폴리에스테릴 Staple Top 포함
51430	아 크 릴 릿 섬유	㎏	아크릴릭 Staple Top 포함 아크릴릭 Staple Fiber 포함
51449	에 티 벤 그 리 콜	㎏	
51459	T D I	"	
51469	아 세 톤	"	
51479	T P A	"	테레프 탈산
51489	규 산 소 다	"	규산 나트륨
51499	안 료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51509	B R	M/T	폴리 부타디엔
51519	케 늘 수 지	M/T	
51529	폴 리 우 레 탄	M/T	
51539	케 늘	M/T	
51549	알 킬 벤 겐	M/T	
51559	아 세 트 알 데 히 드	M/T	
51569	가 소 계	"	
51579	규 산 질 비 료	"	
51589	메 라 닌	"	
51599	비 스 코 스 섬 유	"	
51609	포 리 프 로 피 렌 섬 유	M/T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52010	바 니 스	ℓ	
52020	락 카	ℓ	
52030	에 나 멜	kl	
52040	유 성 페 인 트	kl	
52050	수 성 페 인 트	kl	택스포함조사
52060 ☆	의 약 품	백만원	
52070 ☆	세 탁 비 누	M/T	분말세탁비누 포함
52080	화 장 비 누	M/T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52090	글 리 세 린	kg	
52100	세 탁 용 합 성 세 제	M _g	(고형세제분말, 액체포함)
52110	치 약	kg	치분제외
52120	화 장 수	kg	밀크로션류 제외
52128	화 장 수	ℓ	크린싱크림, 콜드크림, 영양
52130	화 장 크 림	kg	크림 등 각종 고형크림 조사
52140	화 장 백 분	kg	고형 및 분말만을 조사한다. (화운데이션과 몸에 바르는 분 제외)
52150	머 리 기 림	kg	포마드, 헤어오일, 헤어크림 포함 조사
52160	다 이 나 마 이 트	kg	
52170	초 안 폭 약	kg	초유폭약 제외
52180	도 화 선	km	도폭선 제외
52190	뇌 관	천 개	공업뇌관, 전기뇌관 포함
52200☆	성 냥	천 갑	가정용, 덕용 대형기준
52210	카 본 블 랙	M _g	순수탄소 포함
52220	인 쇄 잉 크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52230	항 료	kg	화장품 향수제외
52249	삼 푸	kg	
52259	립 스 틱	개	
52269	계 면 활 성 제	M ²	
52279	계 활 성 탄 소	kg	
52289	접 착 제	M ²	
353. 석유정제업			
53010	젯 트 유	kl	제트기관 및 항공기터빈기관용
53020	휘 발 유	kl	
53030	나 프 타	kl	
53040	등 유	kl	
53050	경 유	kl	
53060	중 유	kl	방카C유 제외
53070	방 카 C 유	kl	
53080	윤 활 유	kl	구리스, 식물성윤활유 제외
53090	액 화 석 유 개 스	kl	
53109	솔 벤 트	kl	
354.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54010☆	가 중 연 탄	M ²	
54020	코 크 스	M ²	팩코크스, 분코크스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54030	아 스 팔 트	㎏	
54049	루 핑 지	㎏	
355. 고무제품 제조업			
55010	자 동 차 용 타 이 어	본	모터싸이클용타이어 제외
55020	자 전 거 용 타 이 어	천 본	모터싸이클용타이어, 어린이용 삼발자전거타이어 제외
55030	자 동 차 용 튜 우 브	본	
55040	자 전 거 용 튜 우 브	천 본	모터싸이클용튜브 제외
55050	재 생 타 이 어	본	
55060	고 무 칩	천결베	
55070	고 무 장 화 및 우 화	천결베	
55080	운 동 화	천결베	훈련화 (통일화), 노동화 포함.
55090	고 무 호 스	m	
55100	각 종 고 무 벨 트	천Ply	
55110	스 폰 지	m ²	합성수지스폰지 제외
55129	재 생 고 무	M ²	
55139	고 무 의 부	벌	상의, 하의 합쳐서 한벌이고 외투식은 한개를 한벌로 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5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6010	플 라 스 틱 제 품	ㄲ	
56011	플라ستيك제식기및용기	ㄲ	
56012	플 라 스 틱 제 신	ㄲ	
56013	플 라 스 틱 제 필 림	ㄲ	
56014	플라ستيك제파이프및관	ㄲ	
56015	플 라 스 틱 레 저	ㄲ	
56016	기 타 플 라 스 틱 제 품	ㄲ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61.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61010	도 자 식 기	천 개	토기제품 제외
61020	위 생 도 기	개	(건물내에 영구히 고정시 키는)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욕조만 조사
61030	고 압 애 자	개	3300 V 이상 (전기스윗치용 제외)
61031	고 압 애 자	개	750-7000 V
61032	특 고 압 애 자	개	7000 V 이상
61040	저 압 애 자	개	3300 V 미만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61041	저 압 애 자	"	(전기스윗치용 제외) 750 V이하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62010	관 유 리	상 자	
62020	유 리 술 병	천 개	화장품병, 식초병, 간장병, 꽃병, 니스병 제외
62030	유 리 약 병	천 개	농약병 제외
62040	유 리 식 기	천 개	세족잔, 양주잔, 소주잔, 재떨이와 유리문구용품 (잉크병, 잉크스탠드 등) 제외
62059	유 리 관 (二관유리)	ㄹ	
62069	무 뇌 유 리	상 자	
62079	안 전 유 리	"	강화유리, 접합유리 포함
62089	보 은 병	ㄹ	
62099	음 료 수 병	천 개	
62109	유 리 섬 유	ㄹ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69010 ☆	벽 돌 (소 성)	천 매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 (오지벽돌 포함) 기준규격 1매 = 2.5 kg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69020	타일	천 m^2	오지타일, 내장타일, 외장타일 모자이크타일 포함 조사 (관석 제외)
69030 ☆	내화벽돌	$\%$	330 매 = 1 $\%$ (# S,K 32)
69040	내화물탈	kg	
69050	포오틀란드시멘트	천 $\%$	
69060	백시멘트	$\%$	
69070 ☆	소석회	$\%$	생선회, 수정성석회 제외
69080 ☆	콘크리트블록	천 매	보도용 콘크리트블록 조사 제외
69090 ☆	콘크리트벽돌	천 매	
69100 ☆	콘크리트관	본	
69110	흙관	본	
69120	콘크리트전주	본	
69130	콘크리트파일	본	
69140 ☆	콘크리트기와	천 매	
69150	레미콘	m^3	
69160	석면스레트	천 m^2	
69179	부정형내화물	$\%$	내화물탈 제외
69189	시멘트크링카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69199	연 마 지 석	%	
	중분류 37. 제 1 차 금속산업		
	371. 제 1 차 철강산업		
71010	선 철	%	재생선철 제외
71011	제 강 용 선 철	"	
71012	주 물 용 선 철	"	
71020	합 금 철	"	망강철, 규소철, 크롬철, 몰리브데넘철, 니켈철, 규소망강철, 텅크스텐철, 티타늄철 등
71030	강 피	%	압연용 및 단조용의 보통 강피, 고 탄소강피, 합금강 피
71040	강 반 성 품	%	스라브, 브롬, 빌렛, 쉬트바, 핫코일, 대강 등을 포함
71041	강 반 성 품	%	브롬, 스텐, 빌렛, 쉬트바등
71042	열 연 대 강	"	
71043	냉 연 대 강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71050	주 강	㎏	용강을 최종목적제품의 형태로 된 주형에 주입하여 제조한 강제품 (보통 고탄소 합금강, 주강 포함)
71060	봉 강	㎏	환강, 환철, 평강, 각강, 반월강 포함
71070	철 근	㎏	이형철근, 원형철근 포함
71080	형 강	㎏	(angle) (chamel) 산형강, 구형강, L형강, H형강, T형강, I-빔
71090	중 후 판	㎏	3 mm 이상
71100	박 판	㎏	3 mm 미만
71101	열 연 박 판	㎏	
71102	냉 연 박 판	㎏	
71110	선 재	㎏	BAR IN COIL 포함
71120	강 관	㎏	단형, 타단형, 각형으로 내부가 비어있는 것 (무계목, 단접, 전봉, 전호용접)
71130	주 철 관	㎏	직관, 이형관 (십자관, T자관, Z자관, 곡관, 단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71140	가 난 주 물	M ₂	주물용 선철로 제조 내부가 비어있는 것 C ₂ 의 함량이 적고 저린(P) 저유황 및 0.2~0.5% M ₂ 을 함유하는 것 (표면이 흰회색)
71150 ☆	기 계 용 주 물 (회 주 물)	M ₂	철제 가마솥, 화로, 철구 등 제의
71160	석 도 철 판	M ₂	전기도금석도강판, 열지도금 석도강판
71170	아 연 도 철 판	M ₂	(평판, 파판포함) 전기도금, 열지도금
71180	와 이 어 로 프	M ₂	
71190 ☆	쇠	M ₂	철선으로 만든 것은 모두 포함 (나사못, 황동못, 나무 못 등 특수못 제외)
71200	흑 철 선	M ₂	
71201 ☆	경 강 선	M ₂	
71202	P · C 강 선	M ₂	
71203	아 연 도 철 선	M ₂	
71204	기 타 흑 철 선	M ₂	경강선, P·C 강선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71219	전 기 강 판	"	일명 규소강판
71229	케 조	"	
71239	구 상 흑 연 주 물	"	일명 강인주철, 닥타일, 구상 화원소(마그네슘 셀룸)을 첨가해서 표면이 평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구상화된 주물
71249	합 금 주 물	"	Ni.Cr.Mo을 합금하여 耐 熱, 耐酸에 강한 주물
71259	단 강 품	"	
71269	스 텐 레 스 스틸 판	㎏	

372. 제 1 차 비철금속산업

72010	전 기 동	㎏	동쇼트, 해감봉 등 제외
72020	알 미 늬 피	"	
72030	연 피	"	
72040	아 연 피	"	
72050	은	kg	
72060	금	kg	
72070 ☆	동 판 및 판	㎏	단동, 황동, 청동판 및 판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72080☆	알 미 늬 판	M ₄	알미늬박 및 띠 제외
72090	나 동 선	"	직경 6mm 미만
72100☆	알 미 늬 주 물 제 품	"	
72119	알 루 미 늬 합 금	"	
72129	아 연 분	"	
72139	동 봉 및 형 강	"	
72149	동 판 및 띠	"	
72159	동 판 및 중 공 봉	"	
72169	알 루 미 늬 및 형 강	"	건축용샷슈제의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81010☆	공 장 용 수 공 구	천 개	함마, 드라이버포함 (총곳, 제외)
81020☆	농 업 용 수 공 구	개	금속제만 조사 (삽, 곡괭이, 팽이, 호미, 쟁기, 도끼, 포크, 작두, 낫, 전지기 등)
81030☆	철 제 캐 비 넷	개	화일박스 제외
81040☆	철 제 의 자	개	틀이 금속으로 된 회전의자 및 침대겸용 의자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1050	철 제 책 상	개	철제탁상 (타자기용 탁상) 등 제외
81060 ☆	건 물 용 문 및 수 문	개	샷터, 덧창, 창틀 제외
81070 ☆	건 축 용 샷 슈	㎏	샷슈바 제외
81080 ☆	보 일 러	대	세조날 보일러와 공업용
81088 ☆	보 일 러	T/H	보일러로 구분 조사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
81090	통 조 림 용 관	천 개	미술관 (과자캔, 설탕캔, 우 유캔 등) 제외
81100	드 림 관	개	200ℓ 용기만 조사
81110 ☆	알 미 늄 프 레 스 가 공 식 기 및 용 기	㎏	주물제품은 알미늄주물제품 (277) 으로 조사할 것
81120 ☆	스텐레스스틸제식기	㎏	한식기와 양식기로 구분조 사
81130 ☆	방 열 기	매	중양난방용 방열기만 조사 [콘벡타, 월히터, 자동차용 방열기 (연소기가 부착된것 제외)]
81140	자 동 차 용 방 열 기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1150	석 유 스토브	개	콘로겸용은 포함(콘로는 제외)
81160 ☆	볼트 및 너트	㎍	와셔, 리벳트 등은 제외
81170	금속관이음쇠	㎍	리벳트는 제외
81180 ☆	철사망	㎍	철조망, 스토브망, 선풍기망, 방충망, P.V.C 입힌 유리대용 등은 제외할 것
81190	금고	개	어린이 저금통 및 임시보관용 수제금고 제외
81200	자동차용코일스프링	개	차체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 조사(의자, 시계 및 기타의 스프링 제외)
81210	자동차용중판스프링	천 매	
81220	용접봉	㎍	
81230	체인	kg	연계체인과 주로 철판, 금속대, 철선으로 만든 메트레스체인, 싱크스토퍼체인, 동력전달체인 등만 조사함(모조장신구체인은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1249	금 속 식 탁 용 품	천 개	수저, 국자, 포크, 나이프, 주 걱등 식기제의
81259	열 교 환 기	대	
81269	금 속 구 조 물	kg	조립금속의 건물 및 각종구조물
81279	금속가스탱크·용기	kl	압축액화가스운반 및 저장용 기
81289	금속탱크및용기	kl	압축액화가스운반 및 저장용 기 제외
81299	병 마 개	천 개	
81309	철 제 칩 대	대	
81319	샷 터	m ²	
382. 기체 제조업 (전기 제외)			
82010	내 연 기 관	HP	석유, 알콜, 개스 등을 연료 로 하는 불꽃점화 및 압축 점화용 내용기관만 조사하고 선박 및 차량용은 제외 (발 동기와 디젤기관을 내연기관 으로 조사한다)
82020 ☆	동 력 탈 곡 기	대	
82030	경 운 기	HP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2040 ☆	분 무 기	대	
82041	동 력 분 무 기	대	농업용 분무기만 조사 [소형 분무기 (가정용) 와 스프리건 제외]
82042	인 력 분 무 기	대	"
82043	동 력 살 분 무 기	대	"
82050	농 업 용 트 랙 터	대	
82060 ☆	선 반	대	나사선반, 터렛선반, 카핑선반 등 포함
82070 ☆	프 레 스 기	대	유압식프레스기 및 샤링기, 편칭기, 노칭기, 벤딩기, 압출 프레스기, 인반기, 금속스피닝 기 포함
82080	압 출 기	대	
82090	압 연 기 룰	부	철드롤이나 압연용룰 포함. 곡물분쇄용 고무룰 제외
82100	절 삭 공 구	천 개	금속공작용 절삭공구만 조사 하고 나무공작용 및 기타 재료 공작용 절삭공구는 제외
82110	연 사 기	대	합사기는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2120	직 기	대	
82121	면 직 기	대	
82122	견 직 기	대	
82123	기 타 직 기	대	각종 직물을 짜는 직기를 포함
82130	편 직 기	대	
82131	횡 편 직 기	대	
82132	환 편 직 기	대	
82133	기 타 편 직 기	대	횡편직기와 환편직기 제외한 기타 편직기만 조사
82140	총 광	천 개	
82150	샷 틀	대	직기의 북
82160 ☆	정 미 기	대	현미기 압맥기, 제분기등 제외
82170	정 맥 기	대	
82180	활 판 인 쇄 기	대	평압식인쇄기와 원통압식 인 쇄기만 조사하고 석판인쇄기, 옵셋인쇄기, 그라비아인쇄기, 특수인쇄기 등은 제외한다.
82190	전 자 계 산 기	대	
82191	탁 상 용 전 자 계 산 기	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2192	휴대용 전자 계산기	대	
82200	타 자 기	대	사무용타자기, 전동타자기, 공 판타자기, 휴대용타자기를 포 함
82210 ☆	동 력 펌 프	대	자동식 펌프, 양수기 포함 (수동식펌프 제외)
82220	공 기 압 축 기	대	
82230	호 이 스 트	대	
82240	크 레 인	대	capacity ton 을 조사 이동식크레인, 정지형크레인, 교량형크레인, 캔트리크레인 등(Cantry) 포함
82250	엘 레 베 이 터	대	화물용은 제외
82260	가 정 용 재 봉 틀	대	가정용손틀, 발틀, 전기식 재 봉기 포함
82270	공 업 용 재 봉 틀	대	
82271	일 본 칩 직 선 틀 본 봉 재 봉 틀	대	
82272	오 바 로 크 및 인 타 로 크 재 봉 틀	대	
82273	기 타 공 업 용 재 봉 틀	대	직물용재봉기, 가죽용재봉기,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2280 ☆	기 어	개	포대봉합적재봉기 등 산업용 에 쓰이는 재봉틀을 포함 자동차제동장치인 기어 제외
82290 ☆	베 어 링	kg	
82291	블 베 어 링	kg	스라스트베어링 포함 조사
82292	로 울 러 베 어 링	kg	
82293	메 탈 베 어 링	kg	
82294	기 타 베 어 링	kg	자동차용 메탈베어링, 엔진베 어링, 유니버살조인트 제외
82300	패 케 이 지 형 에 어 콘 디 쇼 너	대	대형자장 공기조절 에어컨
82308	패 케 이 지 형 에 어 콘 디 쇼 너	R/T	
82310	원 도 우 형 에 어 콘 디 쇼 너	대	룸에어콘만 조사하고 (차량 용에어콘(카쿨러) 제외)
82320	자 동 차 용 피 스톤	개	산업용피스톤은 제외할 것
82330 ☆	발 브	개	건축용, 기계용, 공업용만 포함 조사. (타이어튜브발브,수도꼭 지는 제외)
82331	청 동 발 브	개	
82332	주 철 발 브	"	
82333	주 강 발 브	"	
82334	기 타 발 브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2349	밀 링 기	대	
82359	드 릴 링 기	"	
82369	압 연 기	"	
82379	드 레 그 라 인	"	
82389	로 더	"	
82399	굴 삭 기	"	엑스카베이터
82409	불 도 저	"	
82419	금 전 등 록 기	"	
82429	송 배 풍 기	"	
82439	콘 베 이 어	"	
82449	지 계 차	"	포크리프트
82459	발 동 기	대	석유용만 조사할 것
82469	인 력 탈 곡 기	대	
82479	염 색 기	대	
82489	연 탄 제 조 기	대	
82499	스 편 들	개	직기부품
82509	링	개	직기부품

383. 전기 기계 기구 제조업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3010 ☆	전 동 기	IP	
83011	직 류 전 동 기	IP	내연기관용 전동기 및 수리 품 제외
83012	교 류 전 동 기	IP	내연기관용 전동기 및 수리 품 제외
83020 ☆	변 압 기	KVA	송배전용 및 기계용 등 강 전용 변압기만 조사 (약전 초인종 등과 같은 계기용 변압기의 소형 및 수리품은 제외)
83030	시 동 전 동 기	대	시동모타(기관에 임시로 연 결시키도록 기계장치가 부착 된 소형전기 모터)(내연 기관용으로 통상직류)
83040	고 압 축 전 기	KVA	전기산업의 여러분야에 사용 되는 것으로 산업기기를 위 한 축전기
83050	저 압 축 전 기	M F	전기산업의 여러분야에 사용 되는 것으로 산업기기를 위 한 축전기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3110	확 성 기	천 개	TV, 라디오, 전축, 스피커 등을 조사. (트랜지스터 메가폰, 학교·야외연락용으로 쓰이는 나팔형, 대형 및 헤드폰, 전화기구용 등 소형은 제외)
83120	앰 프	대	인터폰 등에 사용되는 소형앰프는 제외 (출력 10 Watt 이하는 음성증폭기로 조사)
83130	T V 튜 너	개	T V 수상기의 채널 선택장치로 VHF 튜너, UHF 튜너 조사
83140	전 화 기	대	
83141	자 동 식 전 화 기	대	체신 1호 표준형 전화기와 다이얼이 보당식으로 대체되어 외부(전화국)와 연결통화되는 키폰 및 수출용인 장식용 전화기포함 조사 (인터폰이나 무전기 등 제외)
83142	자 석 식 전 화 기	대	
83143	공 전 식 전 화 기	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3150	수 동 식 전 화 교 환 기	대	자석식교환기, 공전식전화교환기 (군야전용교환기, 극소형은 제외)
83160	자 동 식 전 화 교 환 기	회 선	크로스바교환기, 전자교환기등 조사
83170	브 라 운 관	대	
83171	흑 백 브 라 운 관	대	TV수상기의 영상신호를 화
83172	칼 라 브 라 운 관	대	면으로 변환시키는 음극 선 관 (관측용 브라운관, 절환관, 프린트관, 축전관 및 TV용 브라운관중 수리품은 제외)
83180	계 수 표 시 방 전 관	천 개	반제품 MOUNT 제외 조사
83190	다 이 오 드	천 개	
83191	켈 마 니 움 다 이 오 드	천 개	전자회로중 검파정류작용을
83192	실 리 콘 다 이 오 드	천 개	하는 반도체부품임 (시그널다이오드, 전력용 정 유다이오드, 전압조절다이오드, 터널다이오드 등 포함)
83200	집 적 회 로 (IC)	천 개	후막집적회로, 피막집적회로, 반도체집적회로, 혼성집적회로 포함조사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3210	트 랜 지 스 터 (T . R)	천 개	
83211	켈 마 니 움 트 랜 지 스 터 (T . R)	천 개	
83212	실 리 콘 트 랜 지 스 터 (T . R)	천 개	
83220	가 변 저 항 기	천 개	저항치를 임의로 가변할 수 있는 부품 (탄소피막, 금속피막, 권성형 가변저항기 등 조사)
83230	고 정 저 항 기	천 개	탄소피막, 금속피막, 탄소체 혼 합, 권선고정저항기 등 조사
83240	가 변 콘 멘 서	천 개	전자기기용으로 전자기기용 이 아닌 것은 축전기로 조 사할 것
83250 ☆	고 정 콘 멘 서	천 개	전자기기용으로 전자기기용 이 아닌 것은 축전기로 조 사할 것
83260	기 역 소 자	개	
83270	마 그 네 틱 헤 드	천 개	
83280	레 코 드 판	매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3290	녹 음 테 이 프	천 개	자기녹음테이프로서 녹음된 테 프 포함 조사하되 60 분용 (C - 60) 으로 환산 조사 기재한다. (C - 0 는 제외)
83300	전 기 냉 장 고	대	용량별로 구분 가정용만 조 사 (아이스박스, 냉동기 제 외)
83310 [*]	선 풍 기	대	환풍기 제습기 제외
83320	전 기 세 탁 기	대	가정용 전기세탁기만 조사
83330	전 기 스 토 브	대	식품가열용 장치 제외
83340	전 기 믹 사	대	산업용 제외, 가정용만 조 사
83350	전 기 밥 솥	개	전기밥솥과 전기보온밥통겸 용은 전기밥솥으로 조사 할 것.
83360	전 기 보 온 밥 통	개	
83370	통 신 선 및 통 신 용 케 이 블 선	㉔	각종 절연전화전신선 및 전 자선 케이블선 조사
83380	전 력 선 및 전 력 용 케 이 블 선	㉔	각종 전력용선 및 전력용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3390 ☆	백 열 전 구	천 개	케이블선 조사 제품의 규격을 반드시 명시 15 W 이상의 조명용만 조사 (크리스마스휴리용 등 15W 이하 소형전구 제외)
83400	형 광 전 구	천 개	직관형광등, 환형형광등 포함 조사 (네온사인, 가스방전관 및 구 (수은등) 헬륨, 알곤가 스, 크세논 등 기타 방전관 제외)
83410	축 전 지	개	전류를 흐르게 하면 화학적 변화가 역행 충전재생되는 것으로 전전지와 구분되는 2차전지임 (납산축전지와 알 카리축전지 조사)
83420	전 전 지	천 개	충전재생할 수 없는 1차 전지 (불항성전지, 습전지, 농 축전지, 카본전극봉 제외)
83439	발 전 기	kw	
83449	등 안 전 기	천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3459	배 전 반	대	
83469	전 력 회 로 차 단 기	"	고압, 저압 포함
83479	전 기 용 접 기	"	아크용접장치 저항용접기 포함
83489	정 류 기	"	
83499	마 이 크 로 폰	개	
83509	무 전 기	대	
83519	경 보 기	개	
83529	전 자 기 기 용 유 도 자	천 개	코일, 트랜스포머등
83539	음 성 증 폭 기	대	
83549	드 라 이 어	"	
83559	환 풍 기	"	
83569	진 공 소 제 기	"	
83579	장 식 용 전 구	천 개	
83589	실 드 빔 램 프	"	차량 부착용
83599	헤 더	개	
83609	냉 동 기	R/T	
83619	소 키 트	개	
83629	고 압 차 단 기	대	
83639	저 압 차 단 기	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84. 운수장비제조업			
84010	선박용내연기관	IP	선박용 디젤기관+소속기관 조사
84020	철강화물선	G/T	
84021	철강화물선	G/T	바지선 포함
84022	철강유조선	G/T	
84030	철강어선	G/T	포획활동을 하지 않고 가 공활동만 하는 부유생선공 장선 및 고래가공선 포함 조사(수리품 제외)
84040 ☆	목조어선	G/T	" "
84050	여객차	량	수하물차, 침대차, 식당차,포 함 조사(병원차, 죄수차,검 사차 및 기타 특수목적 차 량제외)
84060	화차	량	무개차(곤도라)평저차, 유 개차, 유조차, 냉장차 및 연 계장치가 결합된 광산차도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4070	완 충 기	개	
84080	철 도 차 량 료	개	전차 및 천정크레인의 운심, 강재의 바퀴포함 [압연제품, 제조물주강 (단조 및 주강품) 제외]
84090	승 용 차	대	Jeep 포함
84100	소 형 트 렉	대	3톤 이상 ~ 4톤미만
84110	중 형 트 렉	대	4톤이상 ~ 8톤미만
84120	대 형 트 렉	대	8톤이상
84130	소 형 버 스	대	16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마이크로버스)
84140	대 형 버 스	대	25인승 이상
84150	자 동 차 용 내 연 기 관	대	
84160	자 동 차 료	개	
84170	차 축	개	
84180	자 전 거 차 체	대	
84190	자 전 거 링	개	리어커링 제외
84200	모 터 싸 이 클	대	모타스쿠터, 오싸이클골프차, 눈차 및 기타 특수목적차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4219	특 수 화 물 선	G/T	
84229	디 켈 기 관 차	대	
84239	전 등 차	"	
84249	철 도 용 내 연 기 관	"	
84259	특 수 차	"	
84269	광 차	량	지하광산에서 조작하도록 설계된 기관차 (외부전력, 축전지전력, 내연기관으로 가동)

38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85010	온 도 계	개	알콜 및 수은으로 된 실내 및 실외온도계 (산업용온도계, 금속온도계, 팽창, 압력온도계, 자기온도계 제외)
85020	적 산 전 력 계	대	전력소비량측정계기, 단상 및 다상교류전계직류전산 전류계 포함.
85030	수 도 미 터	개	가스미터기 제외
85040	안 경 테	천 개	
85050	복 사 기	대	청사진복사기 제외
85060	쌍 안 경	개	원구쌍안경 (어린이용) 제외
85070	광 학 용 렌 즈	개	안경렌즈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85080	손 목 시 계	개	
85081	일 반 손 목 시 계	개	전자벽시계를 제외
85082	전 자 손 목 시 계	개	
85090	벽 시 계	개	전자벽시계 포함 (계기판 시계 (옥외설치용전기시계) 특수용시계 (예 , 집수기록 용 제외)
85100	탁 상 시 계	개	전자탁상시계 포함조사
85110	손 목 시 계 케 이 스	개	
85129	가 스 공 급 계 기	개	
85139	선 그 라 스	천 개	
85149	사 진 기	대	
85159	사 진 섬 광 기	개	
85169	큰 시 계 케 이 스	"	
중분류 39. 기타제조업			
390. 기타 제조업			
90010	피 아 노	대	
90020	울	대	전자울겐 제외
90030	기 타	대	전자기타 제외
90040	야 구 장 갑	개	스키용장갑, 점도용장갑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90050	만 년 필	개	
90060	볼 펜	천 개	
90070	연 필	천 타	색연필 포함 12 타 (打) = 1Gross = 144 자루
90080 ☆	철 제우 산및 양 산살대	천 개	죽제 품살대 제외
90090 ☆	가 발	천 개	
90100 ☆	인 조 눈 섭	천 조	인조속눈섭 포함.
90110	라 이 타	개	
90120 ☆	인 형	개	천을 입힌 인형만조사 (목각 인형, 플라스틱인형, 트로피인형, 각종 알미늄인형 제외)
90130	작 크 (짚 퍼)	km	프라스틱짚퍼 제외
90149	라 켈	개	
90159	대 형 볼	"	
90169	소 형 볼	"	
90179	낙 시 대	개	
90189	복 사 지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90199	나 전 칠 기 공 예 품	개	
90209	정 돈 모	kg	돼치털모만 조사
4. 전 기 업			
99990	총 발전량 및 판매량	백만 kWh	

나. 광공업동태조사 지정원재료분류표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대분류 2. 광업			706	설 탕	㎏
522	갱 목	m ³	707	소기름 (우지)	㎏
778	폭 약	kg	708	경 화 유	㎏
대분류 3. 제조업			780	향 료	kg
중분류 31.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818	통 조 립 관	천 개
311~312 식료품 제조업			313. 음료품제조업		
502	밀 (소맥)	㎏	501	보 리 (대 맥)	㎏
503	콩 (대두)	㎏	502	밀 (소맥)	㎏
504	고 구 마	㎏	504	고 구 마	㎏
505	소 맥 피	㎏	517	호 프	kg
506	탈 지 강	㎏	518	당 밀	㎏
507	콩깻묵 (대두박)	㎏	701	보리쌀 (정맥)	㎏
518	당 밀	㎏	702	밀가루 (소맥분)	㎏
519	생 우 유	㎏	703	옥수수 (가루포함)	㎏
525	어 개 류	㎏	704	녹말가루 (전분)	㎏
702	밀 가 루	㎏	706	설 탕	㎏
703	옥수수 (가루포함)	㎏	710	주 정	kl
704	녹말가루 (전분)	㎏	711	콜 라 원 액	ℓ
705	원 당	㎏	712	옛기름 (맥아)	㎏
			749	탄 산 가 스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80	향 료	kg	716	방 모 사	kg
790	유 리 병	천개	717-1	재 생 섬 유 사 (아세테이트포함)	㎥
877	쌀 (현미, 백미)	kg	717-2	합 성 섬 유 사	㎥
314. 담배제조업			718	생 사	kg
516	잎 담 배	㎥	726	화 학 펄 프	㎥
738	은 박 지	㎥	752	카 프 로 락 담	㎥
740	필 타	㎥	768	폴 리 에 치 렌 수 지	kg
869	권 련 지	kg	770	폴 리 프 로 피 렌 수 지	kg
중분류 32.섬유·의복및가죽산업			771	합 성 섬 유 (톱, 설, 화이버)	kg
321. 섬유제조업			772	재 생 섬 유 (SF면, 아세테이트섬유포함)	kg
508	원 면	㎥	774	A . N 모 노 마	㎥
509	누 에 고 치 (잠 견)	kg	775	에 치 렌 그 리 골	㎥
510	지 부 양 모	kg	776	D . M . T	㎥
511	세 척 양 모	kg	876	나 일 론 수 지	kg
512	아 마	kg	880	부 잠 사	kg
513	아 바 카	kg	881	견 방 사	kg
515	모 실	kg	882	어 망 사	kg
713	양 모 톱	kg	899	T . P . A	㎥
714	면 사	kg	322. 의복제조업		
715	소 모 사	kg	719	면 직 물	m ²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20	순 소 모 직 물	m ²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	
721	순 방 모 직 물	m ²	521	원 목	m ³
722-1	재생섬유직물 (아세테이트포함)	m ²	758	호 르 마 린	%
722-2	합성섬유직물	m ²	759	메 타 놀	%
723-1	혼방재생섬유직물 (아세테이트포함)	m ²	332	가구 및 전구제조업	
723-2	혼방합성섬유직물	m ²	727	각 재	m ³
723-3	혼 방 면 직 물	m ²	728	판 재	m ³
723-4	혼 방 모 직 물	m ²	729	합 판	m ³
723-5	혼 방 견 직 물	m ²		중분류 34. 종이, 종이제품, 인쇄 출판 제조업	
724	소 가 죽	m ²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	
875	순 본 견 직 물	m ²	512	아 마	kg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 제품 제조업	모피	514	갈 처	kg
520	원 피	매	521	원 목	m ³
724	소 가 죽	m ²	524	고 지	%
898	합 성 피 혁	m ²	624	활 식 분	%
	324. 신발 제조업		702	밀 가 루	%
724	소 가 죽	m ²	714	면 사	kg
898	합 성 피 혁	m ²	725	쇄 목 펄 프	%
	중분류 33.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726	화 학 펄 프	%
			731	백 상 지	%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32	중 질 지	%	617	공 업 염	%
733	크 라 프 트 지	%	618	석 회 석	%
735	박 엽 지	kg	741	황 산	%
736	판 지	%	742	염 산	kg
737	골 판 지 원 지	%	743	카 바 이 드	%
744	가 성 소 다	%	744	가 성 소 다	%
751	유 산 반 토	kg	747	소 다 회	%
817	알 미 늄 박	kg	748	암 모 니 아	%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업			750	V . C . M	%
730	신 문 용 지	%	752	카 프 로 락 담	%
731	백 상 지	%	753	염 화 가 리	%
732	중 질 지	%	754	벤 젠	kg
734	아 트 지	kg	755	톨 루 엔	kg
735	박 엽 지	kg	756	키 시 렌	kg
784	인쇄 잉크	kg	758	호 르 마 린	%
중분류 35. 화학물과 화학섬유, 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티제품 제조업			759	메 타 놀	%
3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766	요 소	kg
614	유 황	%	870	에 티 렌	%
615	인 광 석	%	871	프 로 피 렌	%
			872	부 타 디 엔	%
			873	싸 이 크 로 핵 산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88	납 사	kl	761	염 료	kg
789	코 크 스	%	762	그 리 세 린	kg
792	생 석 회	%	763	지 방 산	%
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764	스 테 아 린 산	kg
706	설 탕	%	766	요 소	kg
707	소 기름 (우지)	%	777	스치렌모노다	kg
709	아 마 인 유	kl	779	초 안	kg
710	주 정 (에 타 놀)	kl	780	향 료	kg
738	은 박 지	%	781	아 연 화	kg
741	황 산	%	782	산 화 티 탄	kg
742	염 산	kg	790	유 리 병	천개
744	가 성 소 다	%	872	부 타 디 엔	%
745	규 산 소 다	kg	353. 석유정제조업		
747	소 다 회	%	603	원 유	kl
748	암 모 니 아	%	354. 기타섬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754	벤 젠	kg	601	무 연 탄	%
755	틀 루 엔	kg	602	원료탄 (유연탄)	%
756	키 시 렌	kg	355. 고무제품제조업		
757	알 킬 벤 젠	kg	523	천 연 (생) 고무	%
759	메 타 늘	%	714	면 사 (면사포)	kg
760	무 수 프 탈 산	kg	773	합 성 고무	%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81	아 연 화	kg	616	초 석	㎏
782	산 화 티 탄	kg	618	석 회 석	㎏
783	카 본 블 랙	kg	620	장 석	㎏
883	타 이 어 코 드 사	㎏	621	규 사 및 규 석	㎏
884	재 생 고 무	㎏	625	형 석	㎏
356.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28	백 운 석	㎏
765	가소제 (DOP, DBP 등)	kg	629	파 유 리	㎏
767	P . V . C 수 지	kg	746	유 산 소 오 다 (망 초)	㎏
768	플 리 에 치 렌 수 지	kg	747	소 다 회	㎏
769	플 리 스 치 렌 수 지	kg	369.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70	플 리 프 로 피 렌 수 지	kg	612	점 토	㎏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13	모 래	m ³
361. 도기·자기 및 토기 제조업			618	석 회 석	㎏
612	점 토	㎏	619	고 령 토	㎏
619	고 령 토	㎏	620	장 석	㎏
620	장 석	㎏	621	규 사 및 규 석	㎏
621	규 사 및 규 석	㎏	622	납 석	㎏
627	석 고	㎏	625	형 석	㎏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626	석 면	㎏
			627	석 고	㎏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26	화 학 필 프	%	798	중 후 판	%
739	크라프트지대	천매	799	박 판	%
791	시 멘 트	%	800	주 물	%
797-1	봉 강	%	801	선 재	%
797-2	철 근	%	808	아 연 피	kg
802	철 선	%	372. 제 1차비철금속산업		
887	자 갈	m ²	605	동 광 석	%
중분류 37. 제 1차금속산업			606	연 광 석	%
371. 제 1차 철강산업			607	아 연 광 석	%
602	원료탄 (코크스제조용)	%	610	동 설	kg
604	철 광 석	%	611	알 미 늄 고 철	kg
608	망 강 광 석	%	618	석 화 석	%
609	고 철	%	789	코 크 스	%
618	석 회 석	%	806	전 기 등	kg
789	코 크 스	%	807	연 피	kg
793	선 철	%	808	아 연 피	kg
794	강 피	%	809	알 미 늄 피	kg
795-1	강반성품 (스라브, 비래트, 브름)	%	874	아 루 미 나	kg
795-2	열연대강 (핫코일)	%	888	아 연 설	kg
797-1	봉 강	%	889	연 설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811	알미늄판	kg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815	스테인레스판	kg
609	고철	%	816	등선	kg
610	동설	kg	819	용접봉	kg
611	알미늄고철	kg	878	합금철	kg
789	코크스	%	879	알미늄비래트	kg
793	선철	%	890	석도철판	kg
796	형강	%	382. 기계제조업		
797-1	봉강	%	609	고철	%
798	중후판	%	610	동설	kg
799	박판	%	789	코크스	%
800	주물	%	793	선철	%
801	선재 (와이어로트)	%	796	형강	%
802	철선	%	797-1	봉강	%
803	강관	%	798	중후판	%
804	특수강	%	799	박판	%
806	전기동	kg	800	주물	%
807	연괴	kg	801	선재 (와이어로트)	%
808	아연괴	kg	802	철선	%
809	알미늄괴	kg	803	강관	%
810	황동 (놋쇠, 진유)	kg	804	특수강	%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806	전 기 동	kg	799	박 판	㎏
809	알 미 늄 껍	kg	802	철 선	㎏
810	황동 (놋쇠, 진유)	kg	804	특 수 강	㎏
811	알 미 늄 판	kg	806	전 기 동	kg
812	동 판	kg	807	연 피	kg
815	스테인레스 판	kg	808	아 연 피	kg
816	동 선	kg	809	알 미 늄 껍	kg
819	용 접 봉	kg	810	황동 (놋쇠, 진유)	kg
891	전 동 기	HP	811	알 미 늄 판	kg
892	변 속 기	개	812	동 판	kg
893	내 연 기 관	HP	813	인 청 동 판	kg
894	체 인	kg	814	규 소 강 판	㎏
895	베 아 링	kg	815	스 텐 레 스 판	kg
896	유 압 기 기	대	816	동 선	kg
897	주 강	㎏	817	알 미 늄 박	kg
38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820	트 랜 지 스 터	천개
523	천 연 (생) 고 무	㎏	821	집 적 회 로	개
767	P . V . C 수 지	kg	822	브 라 운 판	개
773	합 성 고 무	㎏	823	P . C . B 원 판	매
798	증 후 판	㎏	824	자석 (마그네트)	천개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384. 운수장비제조업			중분류 39. 기타제조업		
796	형 강	㎏	526	인 모	kg
797-1	봉 강	㎏	623	흑 연	kg
798	중 후 관	㎏	717-1	재 생 섬 유 사 (반합성섬유사포함)	㎏
799	박 관	㎏	717-2	합 성 섬 유 사	㎏
800	주 물	㎏	722-1	재 생 섬 유 직 물 (아세테이트직물포함)	m ²
802	철 선	㎏	722-2	합 성 섬 유 직 물	m ²
803	강 관	㎏	767	P.V.C 수 지	kg
805	대 강	㎏	802	철 선	㎏
809	알 미 늄 과	kg	803	강 관	㎏
819	용 접 봉	kg	810	황 동	kg
825	트 란 스 밧 손	개	815	스 텐 레 스 관	kg
826	자 동 차 엔 진	대	대분류 4. 전기업		
885	타 이 어	본	※ < 연료 및 전력 >		
385.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901	무 연 탄	㎏
			902	원료탄 (유연탄)	㎏
			903	경 유	kl
			904	중 유	kl
810	황 동	kg	905	방 카 C 유	kl
815	스 텐 레 스 관	kg	906	코 크 스	㎏
			907	전 력	천KwH

부록 Ⅲ 도량형단위환산표

< 표 1 > 길 이

	寸	尺	m	in	ft	yd
1 치 (寸)	1	0.1	0.03030	1.1930	0.09941	0.03313
1 자 (尺)	10	1	0.30303	11.930	0.99419	0.33139
1 메 터 (m)	33	3.3	1	39.370	3.2808	1.0936
1 인 치 (in)	0.8382	0.08382	0.0254	1	0.08333	0.02777
1 휘 트 (ft)	10058	1,0058	0.3048	12	1	0.33333
1 야 드 (yd)	30175	3,0175	0.9144	36	3	1

< 표 2 > 넓 이

	平方尺	坪	m ²	in ²	ft ²	yd ²
1 제곱자 (平方尺)	1	0.02777	0.09182	142.33	0.98842	0.10982
1 평 (坪)	36	1	3.3057	5123.9	35.583	3.9536
1 제곱미터 (m ²)	10.89	0.3025	1	1550.0	10.763	1.1959
1 제곱인치 (in ²)	0.007025	0.0001951	0.0006451	1	0.006944	0.0007716
1 제곱휘트 (ft ²)	1.0117	0.02810	0.09290	144	1	0.1111
1 제곱야드 (yd ²)	9.1054	0.25292	0.83612	1296	9	1

< 표 3 >

부

피

	台	升	m ³	ℓ	英 Gallon	美 gallon
1 홉 (台)	1	0.1	0.0001803	0.18039	0.03968	0.04765
1 되 (升)	10	1	0.001803	1.8039	0.39681	0.47654
1 세제곱미터 (m ³)	5543.5	554.35	1	1000	219.97	264.27
1 리터 (ℓ)	5.5435	0.55435	0.001	1	0.21997	0.26417
1갈론 (gallon英)	25206	2520.6	0.004545	4.5459	1	1.2009
1갈론 (gallon美)	20984	2098.4	0.003854	3.7854	0.83270	1

〈표 4〉 무 계

	貫	斤	kg	M/T	英 ton	美 ton	oz	L/B
1 관 (貫)	1	6.25	3.75	0.00375	0.003690	0.004133	132.27	82.671
1 근 (斤)	0.16	1	0.6	0.006	0.0059051	0.006613	21.164	1.3227
1 킬로그램 (kg)	0.26666	1.6666	1	0.001	0.0009841	0.001102	35.273	2.2045
1 메트릭톤 (M/T)	266.666	1666.6	1000	1	0.98418	1.1022	35273	2204.5
1 봉톤 (L/T英)	270.95	1.693.4	1016	1.0130	1	1.12	35.840	2240
1 숏톤 (S/T美)	241.92	1512	907.2	0.9072	0.89235	1	32000	2000
1 온스 (oz)	0.00756	0.04725	0.002835	0.00002835	0.0000279	0.00003125	1	0.0625
1 파운드 (L/B)	0.12096	0.756	0.4536	1.0160	0.0004464	0.0005	16	1

가. 주요단위 해설

1) PPM; 용액 중의 물질 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만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2) d (데니어, Denier); 450 m의 장사(長糸)로 0.05 g 이면 1 데니어임

3) 'S (번수, 番數); 전사 1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 야드를 전환 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1)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 데니어; 5282 / 면사 번수

(840 야드는 1 'S 면사의 길이)

$$(2)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560 야드는 1 'S 소모사의 길이)

$$(3)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 데니어 = 17.331.6 / 방모사 번수

(256 야드는 1 'S 방모사의 길이)

소모사는 영국식으로는 560 야드 1파운드의 것을 1번수라함
예컨대 32 번수 단사(單糸)의 경우는 1/32" S, 쌍사(雙糸)의 경우는 2/32" S로 됨.

4) 추(錘); 조방기(組紡機), 정방기(淸紡機), 연사기(燃糸機) 등 스핀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링”정방기는 1일 16시간 가동으로 20 번수를 0.5 파운드 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짐. 소모울, 정방기로는 48 번수를 0.4 파운드로 생산함.

- 5) D/W (Dead.Weight) ;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 자체의 무게를 뺀 중량 2,240 파운드를 1 중량톤으로 한다.
- 6) G/T (Gross.Tonnage) ;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목 \times 길이 \times 높이의 f^3 , 100 f^3 를 1 G/T 으로 한다.
- 7) 노트 (Knot) ; 배가 1시간에 1해리 (1,853 m)를 달리는 속력
- 8) S/F $\frac{1}{8}$ (Square Feet $\frac{1}{8}$ inch) ; 합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 foot \times 1 foot \times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m^3 로 환산하면

$$0.3048 m \times 0.3048 m \times 0.0254 m \times \frac{1}{8} = 0.00029 m^3 \text{이다.}$$

- [주] 1.1才.....1치 \times 1치 \times 12 자 6. 1坪.....3.3 m^2
- 2.1石.....180 L 7. 木材.....3分板 1평은 9才
- 3.1斤.....1.3 Lbs 4分板 1평은 12才
- 4.1貫.....8.2 Lbs 5分板 1평은 15才
- 5.1捆.....400 Lbs